

WTO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 자유화 논의 동향과 대책

최 세 균	부연구위원
윤 호 섭	연구위원
어 명 근	부연구위원
김 동 민	부연구위원



연구담당자	담 당 분 야
최 세 균	연구 총괄, 제1장, 제3장, 제6장, 제7장
윤 호 섭	제5장, 제7장
어 명 근	제4장, 제7장
김 동 민	제2장, 제7장

머 리 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의 내용은 선진국의 경우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우 2004년까지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식량 수입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가 국제 곡물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에 반해 수출국들은 협상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자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상품의 교역에 관한 자유화 논의 이외에 최근에는 비교역부문으로 취급되던 분야와 국내정책, 사회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세계 무역기구(WTO), OECD, 지역경제협력체(APEC, EU 등)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의 경험을 살려 보다 단기적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논의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 농업분야에 또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과 농업부문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협상의 동태성과 논의 의제의 포괄성 등으로 구체적인 전망과 대책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진지한 정책토론과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 2 장 WTO와 지역주의

1. 서론	6
2. 지역주의의 확대 배경 및 특징	7
3.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0
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13
5.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19
6. 농업에 대한 정책적 함축성	21

제 3 장 WTO의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1. WTO와 GATT	25
2. WTO의 기능과 조직	27
3. 주요 활동 현황	30
4. 농업위원회 동향	31
5. 전망과 대책	36

제 4 장 APEC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1. 서론	42
-------------	----

2. WTO체제에의 기여	47
3.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행계획(MAPA)	49
4. 농업기술협력회의(ATC)	63
5. 식량작업반(TFF)	67
6. 향후 전망 및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71

제 5 장 OECD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1. OECD의 논의 동향	74
2.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결과의 평가	75
3. 농업과 경쟁정책	91
4. 다자간 투자 협정(MAI)	101
5. 논의의 전망과 대책	103

제 6 장 새로운 통상의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106
2. 무역과 환경	108
3. 투자자유화	112
4. 무역과 경쟁정책	115
5. 무역과 노동기준	119
6. 무역과 부패문제	122
7. 전망과 대책	123

제 7 장 전망과 대응방안

1. 전망	126
2. 대응방안	131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GATT에 보고된 관세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7
-------------------------------------	---

제 3 장

표 3-1 농업 관련 자동협상 의제	35
---------------------------	----

제 4 장

표 4-1 관세(Tariff) 분야 개별 실행계획	58
표 4-2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 분야	
개별 실행계획	59
표 4-3 표준 및 적합성(Standard and Conformance) 분야	
개별 실행계획	60
표 4-4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야	
개별 실행계획	61
표 4-5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분야 개별 실행계획	62

부표 1 WTO 협정별 자동협상 의제	138
----------------------------	-----

부표 2 관세(Tariff) 분야 공동 실행계획	143
----------------------------------	-----

부표 3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 분야	
공동 실행계획	144

부표 4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분야	
공동 실행계획	145

그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경제력 집중과 자유화 정도	15
그림 2-2 무역블럭수와 세계 후생	16
그림 2-3 지역주의와 세계 후생	17

제 3 장

그림 3-1 WTO의 조직	29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GATT 기능의 한계성 표출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게 되었다. 이는 GATT의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를 촉발시켰으며 1986년 9월에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1994년 4월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UR협상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1995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 47년간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해 온 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WTO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도출해낸 새로운 세계교역규범의 관리를 위해서 출범한 국제기구로 GATT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WTO는 GATT가 포괄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역분야인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을 규범내에 포함시켰으며, GATT체제하에서 용인되어온 무역규제조치들인 섬유분야의 무역규제, 농산물분야의 예외인정, 수출자

율규제 등도 자유무역의 틀 속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농산물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적용하여 관세는 물론 수입쿼타제와 같은 많은 무역장벽이 존재해 왔다. 이로 말미암아 사실상 GATT체제밖에 있으면서 GATT규정의 폭넓은 예외를 인정받아 온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 농산물 시장의 왜곡현상을 개선하고 농산물 분야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UR협상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예외를 인정받아온 농업부문을 타부문과 같이 국제규범의 틀 속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 밖에 회원국의 무역관련 국내법, 제도, 관행 등에 있어서 명료성을 제고시키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시켜 무역자유화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의 결과는 선진국의 경우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우 2004년까지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의 종결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라운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들 사이에는 큰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 수입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가 국제 곡물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에 반해 수출국들은 협상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무역자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WTO를 주축으로 한 다자주의의 강화와 함께 EU, NAFTA, ASEAN 등 지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

상품의 교역에 관한 자유화 논의 이외에 최근에는 비교역부문으로 취급되던 분야와 국내정책, 사회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역과 환경문제를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이미 WTO 내에 무역과 환경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그밖에 투자자유화, 경쟁정책, 노동문제, 부패문제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새로운 이슈들은 물론 UR 협상 결과의 지속적 이행과 가속화에 관한 논의가 UR협상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세계무역기구는 물론 OECD, 지역경제협력체(APEC, EU 등)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WTO의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도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이 새로운 라운드의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우루과이 라운드의 경험을 살려 보다 단기적으로 마무리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논의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 농업분야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강화되고 있는 지역주의도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 농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대외 경제정책은 물론 국내 정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국제적 논의의 특징은 여러 가지 주제가 다양한 기구와 협의체를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세계 경제의 국제화로 이러한 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또한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농정개혁은 물론 향후 장기적인 농정수립에도 국제 규범과의 조화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의 동향과 진행방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UR협상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유화와 환경, 노동조건, 경쟁정책, 부패문제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논의 등 새로운 무역관련 의제들이 한편으로는 무역의 자유화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

호주의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UR 협상 결과의 지속적 이행과 가속화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세계무역기구는 물론 기타 국제기구와 지역경제협력체를 중심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UR 이후에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 무역자유화 및 무역과 관련된 제반 논의의 동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농산물 무역자유화 논의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조화와 대립이 병존하고 있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현황을 분석, 전망하고, 둘째, 다자주의의 중심인 WTO와 우리 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주의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의 농업관련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을 분석, 전망하고, 셋째, 새로운 논의를 선도하는 OECD의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다양한 무역자유화 관련 의제를 여러 국제기구와 경제협력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국제적 논의는 항상 변화하는 동태적인 것이다. 어느 한 시점에서 논의된 사안이 다음 회의를 거치면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정 또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첫째,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과 여기서 입수된 회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 둘째, 행정부 및 기타 기관의 전문가 면담, 셋째, 행정부의 회의참석 대책 및 회의결과 분석, 넷째, 문헌조사 등이다. 이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하나 여러 국제기구의 동향 가운데 농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과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논의이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의제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UR 농업협정과 관련하여서는 UR 이행 점검, 재협상, 가속화 등

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통상의제와 관련하여서는 APEC, OECD, WT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 투자자유화, 노동, 부패, 경쟁정책 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새로운 통상의제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나 이 보고서에서는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제 2 장

WTO와 지역주의

1. 서 론

한국은 GNP에서 무역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 발전전략 역시 대외지향적 경향을 띠고 있어 세계 경제환경 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세계 경제환경 변화중 하나는 지역주의의 확산이다. 지역주의는 미국, EU와 같이 세계 경제중심국으로 부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GATT창설 이래 1995년까지 109건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에 통보되었고 WTO발족이후 현재까지 1년 반동안 31건이 통보 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의 심화와 확대로 역내무역이 세계무역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지역주의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경제질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주의가 오늘의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면 우리는 이 대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경제의 한부분인 농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주의가 번창해 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일본, 홍콩)은 아직도 어느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의가 가지는 차별성

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비록 한국이 APEC에 가입하고 있지만 APEC은 정치경제적 이질성, 자발적 자유화라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아직은 지역무역협정과 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WTO에 non-paper제출을 통해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권고적, 감시적 및 통제적 기능강화를 제의하고 있다. 지역주의 확산으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충돌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이 세계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즉, 무차별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자유화라는 WTO체제의 목표와 지역주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역주의의 확대배경 및 특징,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 관계, 농업과 관련된 함축성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지역주의의 확대 배경 및 특징

GATT 설립이후 지금까지 GATT 24조에 따라 GATT에 보고된 지역주의는 100개가 넘는다. <표 2-1>에서 보면 1960~70년과 1980~90년대에 지역협정체결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결성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GATT 24조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경제통합에 대해 일정범위내에서 GATT의무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는 GATT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원칙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제24조 입안자들은 지역경제통합에 대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통상조약들에 있어 정형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관습적으로 혹은 명시적인 규정

표 2-1 GATT에 보고된 관세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연 도	1948~59	1960~69	1980~94
건 수	5	57	47

에 의해 오랫동안 많은 지역협정들은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간주되어 왔다. 지역주의에 대해 최혜국대우원칙 예외를 인정한 배경에는 모든 지역주의가 깨져 1930년대처럼 차별적 양자주의로 갈 가능성을 없애고 지역주의가 국가간 무역장벽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질서의 확립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즉, 다자주의가 최종목표로 하는 전세계의 자유무역에 지역주의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지역협정을 제1차 지역주의라고 하고 1980년대 이후에 부활한 지역주의를 제 2차 지역주의로 구분하는 것이 지역주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960년대 시작된 지역주의는 EU의 경우처럼 대부분이 정치적 요인에서 연유했고 개도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개도국의 경우 개도국간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이루어 졌으나 EC와 EFTA를 제외하고 거의 붕괴되었다. 그 이유를 Bhagwati는 우선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하고 가격신호에 따라 산업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료적 협상에 따라 산업조정과 무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전말이 전도되어 붕괴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이 시장기능에만 의존한다면 분배자체가 불공평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 각 참가국들은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현실주의적 협상과 거래가 항상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바그와티의 지적처럼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외의 요인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역주의는 1980년대이후 시작되어 1990년대 고조되기 시작한 제 2차 지역주의이다.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 확대된 배경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GATT 24조 규정과 더불어 미국의 상대적 힘과 지도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전후 일본과 유럽의 급속한 경제재건은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켜 미국이 추구해 왔던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질서가 후퇴한 것이다. 즉 다자주의 옹호자였던 미국의 힘의 균형이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이 취한 경제발전전

락이 신중상주의적 패턴을 취함으로써 일본의 대미무역수지흑자가 누적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다자적인 정신에 입각하기 보다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지역주의이다. 즉 계속되는 무역적자에 대한 빠른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다자주의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째, 민간부문의 요구인 시장적 요소, 즉 기업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이윤극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자주의 뿐만 아니라 지역협정을 통해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Baldwin(1993)은 기발생비용(Sunk Cost)과 비대칭적 행위(Asymmetric Behavior)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네째,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자주의보다 지역주의에 참여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U는 역내시장의 통합을 통해 낙후된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역내시장의 보호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NAFTA는 무역수지의 개선,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 및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와 다자무역체제에서의 입지강화 등을 겨냥하고 있다. ASEAN, MERCOSUR 등 개도국 중심의 경제공동체는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에 대응하고 국제협력에서 선진국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줄이는 동시에 역내국가들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정치적 문화적인 요인도 지역주의 결성에 작용한다. 예컨대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 약속을 통해 인접국가들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길 바라고 있으며 지역경제통합은 해당지역의 안정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바람직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EC통합이다. 2차 대전이후 전쟁의 참화에 지친 유럽인들은 평화의 구축을 위해 유럽국가들간의 통합추진을 희망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사이의 역사적인 원한을 풀고 이들을 함께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인 틀이 필요했다. 전후 세계질서가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체제로 바뀐 점도 유럽단위의 통합을 통한 공동번영과 공동방위의 필요성을 강화시켰고 미국이 EC통합에 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U가 동유럽 등을 포함하면서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북미에서도 이에 상

응하는 지역주의인 NAFTA가 형성된 점, 그리고 터키가 아랍보다 유럽을 선호하고 멕시코가 남미보다 북미를 선호하는 점 등이다.

제 2차 지역주의의 특징은 첫째, 무역마찰의 확대에 따라 보호주의, 일면 자유무역이라는 절충수단으로써 집단적 지역주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경제중심국인 선진국 중심의 지역주의에 주변부의 개도국이 이에 추종하는 형태(미국, EU가 주도)를 띠고 있다. 그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수직적 통합이 일어나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역내우선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역외지역에 대해서도 일정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접한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에서 지역 대 지역간의 협력형태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EU-MERCOSUR,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 확산 움직임과 더불어 지역협의체인 APEC, ASEM 등이 있다.

제 2차 지역주의는 제 1차 지역주의와 같이 동질적 경제간의 수평적 통합만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 인위적 통합과 자연적 통합, 배타성과 개방성이 혼재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의가 세계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역주의가 정형화되는가에 달려 있으며 현재까지는 보호주의와 개방주의가 혼재되어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와 양립해 오고 있다.

3.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지역통합의 동기는 경제발전, 효율성제고, 다른 지역주의에 대한 모방, 지리적 역사적 관계, 안보의 중요성, 정치적 안정,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경제적인 요인이다. EU, NAFTA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 산업구조의 조정, 단일시장의 형성,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라는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개도국간의

많은 협정이 경제적 요인 즉, 시장주도보다는 정책주도가 많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역협정 역시 역사적 관계와 정치적, 전략적 고려, 경제적 유대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비경제적 목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협정의 성공요인은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지역통합에서 경제적 목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며 경제통합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Viner(1950) 교수에 따르면 지역경제통합은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갖는다. Viner는 이런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무역창출(Trade Creation : 고생산 비용인 국내 생산자로부터 효율적이고 저생산비인 역내생산자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무역창출은 국내생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의 이익과 무역전환(Trade Diersion : 저생산비인 역외 생산자로부터 비효율적이고 고생산비인 역내 생산자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무역전환은 효율적인 역외생산자로부터 비효율적인 역내생산자로 수입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후생이 감소함)의 손실이라는 두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를 능가하면 지역경제통합이 후생을 감소시키고 역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능가하면 지역경제통합이 후생을 증가시킨다. Viner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만을 가지고 지역경제통합을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역통합에 많은 국가가 포함될수록 즉, 회원국간 무역거래가 큰 규모일수록 무역창출효과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또한 초기관세수준이 통합후 관세수준보다 높을수록 무역창출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즉 높은 관세로 국내산업이 강한 보호를 받다가 지역통합으로 역내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무역창출효과는 커지게 된다. 회원국들이 더 경쟁적 일 수록 즉 비슷한 재화들이 역내에서 생산될 수록 통합시 무역창출효과의 가능성이 크고 무역전환효과의 가능

성은 적다. 이는 보호구조 때문에 통합전에 생산되던 재화가 관세인하로 보다 효율적인 생산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창출 정도는 운송비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운송비는 어느 정도 국내생산자를 해외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낮은 운송비는 지역통합이 될 경우 역내무역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통합의 경제적 이득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과 달리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평균관세율 수준이 비슷해야 지역통합으로 인한 후생이 역외로 빠져 나가지 않게 된다. 자유무역지대 회원국간 관세율의 큰 차이는 무역굴절 문제(역외국의 무임승차)때문에 자유무역지대 자체의 존립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적절하고 강한 원산지규정이 없는 한 저관세국을 통해 재화가 수입되어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태적인 효과만을 감안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역장벽의 철폐 인하를 통해 자원배분 및 생산효율성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득과 시장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경쟁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동태적인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수치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위에서 논의한 정태적인 효과들은 대부분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로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나타나는 즉각적인 효과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의 즉각적인 효과와 지역경제통합이 형성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될 것인지 소멸될 것인지하는 동태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지역주의의 동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내 회원국정부의 입장과 이해집단, 역외국가의 이해집단과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역내국가의 정부가 현재의 역내시장규모가 충분한 시장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역주의 확대를 원치 않는다. Wolf의 지적에 의하면 대국(Large Country)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지역주의로 무역전환효과를 향유하는 이익집단은 지역주의의 확대를 원치 않

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외의 효율적인 생산자로 확대될 경우 기존의 역내에서 이익을 보던 이익집단의 이윤은 점차로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충분히 이윤의 감소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정부에 압력을 가해 지역주의의 확대를 억제할 것이다.

반면에 역외국가의 이익집단과 정부는 무역전환효과를 우려해 지역주의에 가입하려고 할 것이다. 지역주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은 지역주의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해당기업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 자국정부에게 지역주의 가입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지난 1990년 스웨덴이 EC가입을 추진했을 때 다른 EFTA국가들도 EC 가입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은 스웨덴의 EC 가입으로 EC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 이들 EFTA 국가 기업들이 자국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미국가들에게 미국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서 미국,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 남미국가 기업들이 자국정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할 경우 미주자유무역지대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4.1. 무역블럭의 수와 세계 후생

지금 세계는 이미 지적인 것처럼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경우 유럽, 미국, 아시아 등 3극체제로 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의의 본래 목적이 다자주의를 보완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Krugman(1991)이 지적인 것처럼 3극체제로 갈 경우 다자주의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무역블럭 수와 세계후생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계후생은 무역블럭 수에 따라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3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단 한개의 블럭이 존재하여 세계시장이 완전 자유화됨으로써 세계후생이 극대화되는 경우 둘째, 세계가 무수히 많은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블럭의 시장지배력은 약하고 이에 따라 역의 의존도가 높아 시장왜곡효과는 거의 없어 세계후생 감소효과가 미미한 경우 셋째, 첫째와 둘째의 중간인 소수의 무역블럭이 존재할 경우 블럭간 무역제한으로 인해 시장왜곡효과가 나타나 세계후생은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경우를 기초로 하여 세계 무역블럭의 수와 세계후생과의 관계를 추측하면 U커브모양이 될 수 있다. 이를 실제자료를 통해 검증한 사람은 Mansfield(1992)로 1850~1965 무역자료를 통해 힘의 분포(무역블럭 및 경제력분포)와 자유화 정도를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은 결과가 도출됨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과 미국 중 한 나라가 세계경제를 주도했을 경우 자유화정도¹⁾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간규모의 경제력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화정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무역블럭이 몇 개일때 세계후생을 최소화하는가를 Krugman의 모델²⁾을 통해 살펴보자.

자유무역하의 세계후생 $U=1$ 이라할 때 Krugman 모델에 의하면 세계후생(U)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 자유화정도의 지표는 세계수출/GDP로 표시하고 이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자유화가 상대적으로 진전되어 무역창출에 의한 세계후생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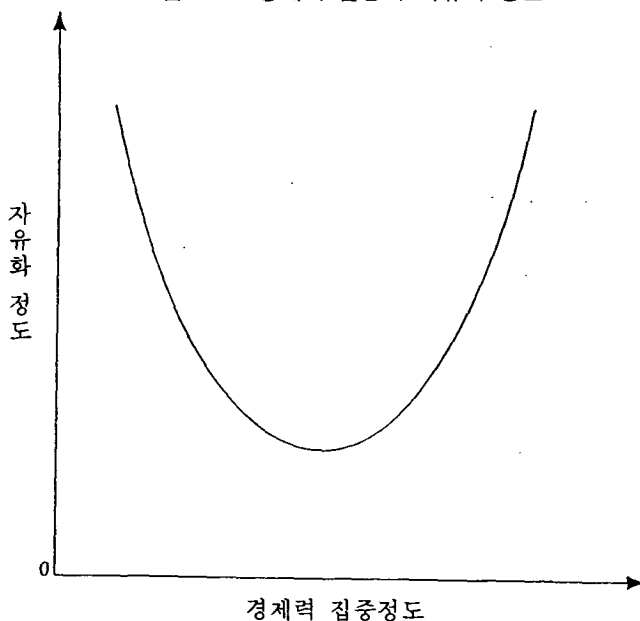
2) Krugman(1991).

$$U = \left[\frac{B}{(1+t)^\sigma + B - 1} \right] \left[(1 - B^{-1}) + B^{-1}(1 + t)^\sigma \right]^{1/\sigma}$$

여기서 B 는 무역블럭 수, σ 는 블럭간 제품의 대체탄성치, t 는 역외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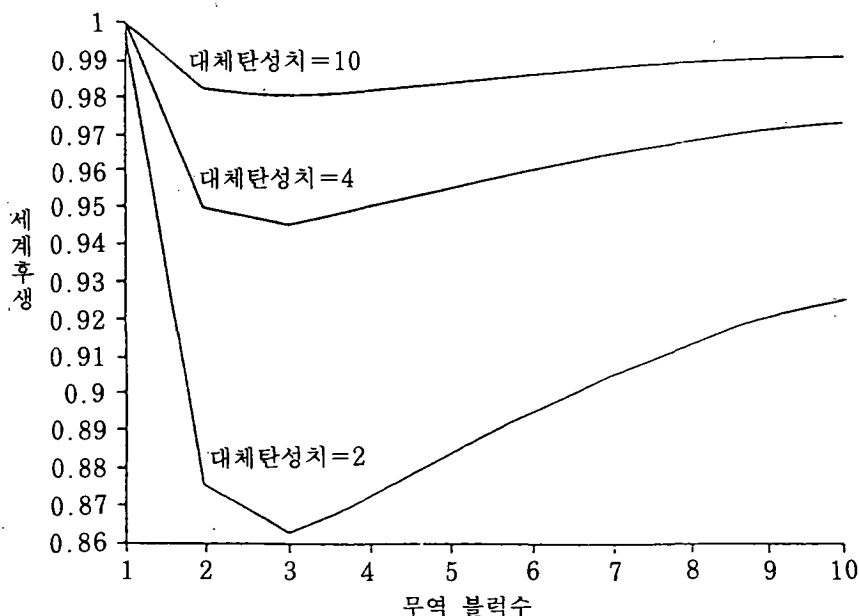
관세수준이 일정할 경우 세계후생은 무역블럭 수와 대체탄성치의 크기의 함수가 된다. 대체탄성치(σ)의 값을 2, 4, 10으로 설정했을 때 세계후생은 무역블럭 수의 함수가 되어 <그림 2-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무역블럭 수와 후생간에는 U커브모양이 되고 무역블럭 수가 3개일 때 세계후생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Krugman은 블럭이 거대화되어 세계가 소수의 거대블럭으로 되면 세계시장 지배력과 역내자급도가 높아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블럭간 제품의 대체탄성치를 낮게 하며 이 경우 세계가 소수블럭으로 분리되는 것이 세계후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림 2-1 경제력 집중과 자유화 정도



Krugman의 모델에서처럼 세계가 소수의 배타적 블록으로 분리된다면 지역주의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나 블록간 역외관세가 높아지거나 추가적인 무역장벽이 생겨나지 않고 있어 동모델은 이론적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또한 동모델은 자연적 무역블록(natural trade bloc)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현존하는 무역블록은 인접국간의 자연적 무역블록의 형태를 띠고 있어 역내 무역자유화로 인한 이익이 지역간 무역감소 비용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세계후생 감소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협조적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에 노력하는 WTO체제하에서는 무역블록의 감소가 다자간 무역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지 GATT기능의 한계를 들어 쌍무적 또는 지역주의를 선호하는 논자에 대해 Krugmsn의 논리는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즉 지역주의가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되고 다자주의를 보완 또는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림 2-2 무역블록수와 세계 후생



4.2.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그리고 세계 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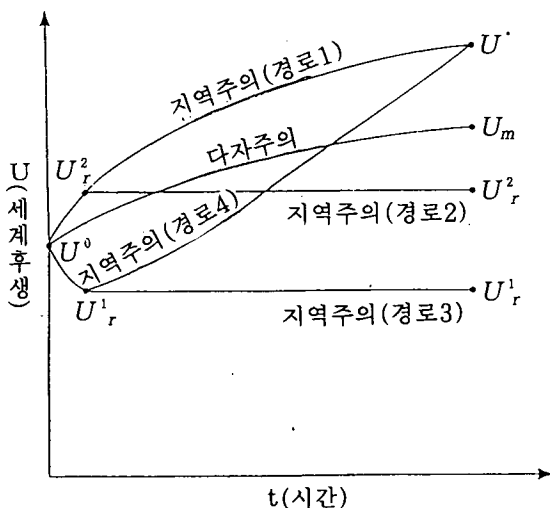
지역주의가 세계후생을 증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감소시킬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우리의 기대는 각 지역블록이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개방적이고 상호간 협조체제(WTO의 다자주의 입장)를 유지해 나가길 희망한다. 이 경우 지역주의는 파괴적 무역블록(Stumbling trade bloc)이 아니라 세계후생을 증진시키는 자유무역의 기초적인 무역블록(bluiding trade bloc)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계를 Bhagwati(1993)의 설명을 통해 동태적으로 살펴보자.

바그와티는 지역주의가 세계경제를 분할된 상태로 고착될 것인가 아니면 지역주의의 확대에 계속 통합될 것인가에 따라 세계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2-3 참조).

〈그림 2-3〉에서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초기상태의 세계후생을 U^0 , 지역무역을 실현된 경우 세계최대후생을 U^* 라고 할 때 지역주의는 다음 4가지 경로를 통해 세계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2-3 지역주의와 세계 후생



첫째, 지역주의가 형성될 경우 즉각적인 후생변화는 Ur^2 로 개선(순 무역창출효과) 되거나 Ur^1 (순 무역전환효과)로 악화될 수 있다. 둘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역블럭이 더이상 확장 통합과정없이 세계 경제를 분할된 상태로 정착된다면 세계후생수준은 초기상태인 Ur^2 (경로 2) 또는 Ur^1 (경로 3)으로 정체될 수 있다. 셋째, 둘째경우와는 달리 초기무역블럭이 계속 확장되고 결합되어 통합될 경우 경로 1과 경로 4를 통해 자유무역하의 세계후생 U^* 에 도달할 수 있다. 넷째, 지역주의 없이 다자주의 과정만을 밟아 자유화할 경우 무임승차(free rider)때문에 U^0 에는 이르지 못하고 U_m 후생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최근의 지역주의가 인접국 더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다자협상에서 협상주체의 수를 줄여 다자협상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번째 경로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세계적 자유무역)에 이르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자주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임승차를 지역협상에서 사전조율함으로써 세계후생 극대화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립가능성은 지역주의가 배타성을 가지지 않고 확대통합되어 다자주의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과제는 지역주의 자체의 역제가 아니라 지역주의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상호협조를 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보완적일 수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책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은 이러한 보완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WTO에 대한 신뢰와 WTO가 지역통합협정을 수용, 규율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WTO에서 개선된 분쟁해결절차가 모순되는 지역통합협정의 규범,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월 지역무역협정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가 상설기구로 WTO에 설치되어 지역주의 문제를 다자기구에서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GATT 24조 조항을 통해 지역협정이 다자주의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항의 구구한 해석 때문에 지역협정이 GATT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1995)보고서는 다자주의와 관련하여 지역주의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커 순효과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각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일반적으로 국제규범에 따른 이익은 쉽게 느껴지지 않는 반면에 지역통합은 즉각적인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의 필요성을 쉽게 인식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협상은 하나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협상은 각국의 이해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다자주의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처한 환경은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의 시험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서비스교역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규범은 UR협상 이전부터 지역협상에서 논의됨으로써 다자간협상을 위한 하나의 실험무대로서의 역할을 했다. 넷째,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협상과정에서의 아이디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EC의 정부조달 규정은 OECD국가들에 의해 개선되고 다시 도쿄라운드를 통해 GATT에 영향을 주었으며 범위확대를 규정한 1992년 GATT규정은 NAFTA에 반영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APEC이라는 느슨

한 지역협력체를 제외한 모든 지역주의의 역외국으로서 폐쇄적 지역주의의 피해를 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는 중요하다. 현재 지역주의 확산과정을 볼때 경제대국들은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그리고 소국들은 안전한 은신처(safe haven)로서 지역주의에 가입할 유인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지역주의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지역주의 발전전망을 간단히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보면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를 보완발전시키는 경우와 다자주의가 제기능을 못해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상충할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역주의가 전자로 진행된다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양자가 해왔던 것처럼 상호작용을 계속할 것이며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무역자유화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지역주의는 새롭고 복잡한 경제정책문제를 다루는 실험장의 역할을 해온 반면 다자주의는 MFN과 호혜주의에 기초를 두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많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상충할 경우 각국은 새로운 이슈에 대해 지역주의적 해결책에 의존할 것이며 지역간 경쟁적인 룰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룰은 무역관계에 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다자주의가 이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다자주의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지역주의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존의 지역주의들이 심화, 확대됨은 물론 각 지역주의간의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과 WTO에서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역주의 문제가 다자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심은 WTO협정의 완전한 이행이며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경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새로운 발전, 즉 다양한 협정의 성립 또는 지역주의의 확대, APEC의 진전 등에 따라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발전방향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 농업에 대한 정책적 함축성

우리나라의 경우 non-paper에서 언급한 것처럼 WTO가 지역주의를 관리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APEC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자주의와 APEC에 적극참여해 지역주의에 의한 상대적 차별대우를 상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무역자유화 가속화에 반대할 수 없고 이는 한국농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와 상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상충될 경우 어느 지역주의에도 가입하지 않은 한국은 여러 지역주의와 양자협상을 하거나 어느 한 지역주의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전혀 비교우위가 없는 농업은 전자에 비해 훨씬 급속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어떠한 경우로 진전되든 지역주의의 확산은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의체인 APEC에서의 농산물 무역자유화 진전 가능성과 지역주의 진전에 따른 국내농업의 대응방안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6.1. APEC

EU, NAFTA 등이 추구하는 역내 특혜적 경제통합과는 달리 APEC은 역내국가간 무역 및 투자장해를 제거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특혜는 역내국가는 물론이고 역외국가에게도 제공하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APEC 산하 EPG(Eminent Persons Group)은 다음 4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첫째, APEC회원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일방적 자유화를 최대한 실시한다. 둘째, 일방적 자유화와 병행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화를 실시한다. 셋째, APEC에서 합의된 자유화의 혜택을 조건부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여 역외국가에게도 제공한다. 넷째, 역외국에 대한 최혜국대

우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이 역내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고 역외국에 대해 비배타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WTO의 다자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즉 역내자유화 조치가 역내국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역외국에게도 확대적용됨으로써 범세계적 자유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적 지역주의는 역외국에 대해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의로서 발전하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의가 본질상 역내국과 역외국을 차별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회원국간의 결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게 개방함으로써 회원수가 늘어날 것이다. 회원국수가 늘어날 수록 집단행동논리에 따라 APEC의 발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APEC내에 4개의 소지역주의 즉, ASEAN제국들로 구성된 AFTA, 북미 3개국으로 구성된 NAFTA, 호주 뉴질랜드간에 체결된 ANZCETA, 칠레와 멕시코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APEC회원국 18개국중 12개국이 소지역주의에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지역주의의 특혜조치가 APEC회원국에게 일반화되지 못할 경우 APEC의 활성화보다는 NAFTA의 확대로 이어지거나 소지역주의간의 연계 등 또 다른 종류의 차별적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넷째, APEC은 다양한 경제구조 및 역사적으로 이질적인 동서양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PEC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주요 수출입국이 포함되어 있어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해 논란이 크다. 이와 같이 APEC의 한계로 인해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실질적으로 UR협상이상으로 진전되기는 어렵지만 동식물 검역 등 간접적인 무역장벽제거에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APEC 지역중 아시아지역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농산물 수요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에 많은 수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APEC지역은 장기적으로 곡물

부문에 있어서 주도적인 성장시장될것으로 미국은 전망하고 있으며 육류 및 가공농산물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소비확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APEC의 무역자유화는 UR에 따른 무역이득외에 상당한 추가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평양경제협력회의(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 PBEC)의 연구에 따르면 1890억불의 추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APEC이 농산물수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상적인 무대라고 생각한다. APEC은 주요 농산물 수입 출국을 포함하고 있어 농산물 무역협상이 다자주의보다 효율성 있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육류 및 가공농산물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증가가 사실상 APEC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APEC 지역이 농산물 및 가공식품 교역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기술적 무역장벽때문에 미국의 농산물수출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농무성 경제연구소(ERS)와 해외농업국(FAS)의 조사에 의하면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인해 피해를 본 미국농산물의 3/4가 APEC지역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직접적인 농산물시장개방은 UR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고 제 2차적인 무역장벽인 위생 및 검역 등 기술적 무역장벽제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APEC를 통해 수입국의 반발이 심한 직접적인 수입개방보다는 간접적인 무역장벽인 위생 및 검역문제의 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PEC이 진전되면 될수록 위생 및 검역등과 같은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개방요구는 증대할 것이며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농산물 수입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6.2. 지역주의의 진전에 대한 농업의 대응

지역주의의 진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며 국민경제의 한부분인 농업도 예외없이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역할 수 없는 무역자유화의 물결에 농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UR에서 한국이 취한 것처럼 기초식량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 회원국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이 지니는 고유한 역할로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개발,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해 일정수준의 농업유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보호는 수입수량제한에 의해 대부분이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위생 및 검역, 표준 및 적합성, 원산지 규정 등과 같은 제 2차 기술적 장벽에 대한 기술과 인력, 장비와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의 통상마찰은 위생 및 검역등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협정은 다자협정에 앞서 실험무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표준 및 적합성 분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위생 및 검역분야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는 각국 경제의 전문화를 의미하며 전문화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경제 또는 산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한국의 농림수산업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국제경쟁 격화는 한국농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경쟁력이 있는 부문으로 흡수되어 전문화되어 갈 것이다. 결국 살아남는 부문은 경쟁력이 있는 부문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빠르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살아 남을 수 있는 몇가지 부분을 선택적으로 키워나가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 베네룩스 3국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통적 산업분야(식품, 화훼, 담배, 섬유, 목재, 제지 등)를 집중지원한 결과 첨단산업보다 오히려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산업전략보다 몇몇 소수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별적 전략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결국 농업내에서도 어느 분야가 동태적인 비교우위를 가지는가에 따라 어느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WTO의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1. WTO와 GATT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경제의 재건과 교역확대를 목표로 1943년 7월 체결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협정에 의해 국제경제의 3대축으로 IMF(외환분야 관장), IBRD(경제개발분야 관장), ITO(국제무역분야 관장)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3대 기구중 ITO 설립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ITO 발족을 전제로 작성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엄격하게는 국제기구가 아닌 협정으로 남게 되었으며 협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국제기구처럼 운영을 한 것이다.

GATT는 하나바(Hanava) 헌장 정신에 따라 1948년 선진 23개국의 참여로 발족한 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재건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GATT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국제무역에 관한 다자간 규범을 제정 하고 이의 이행을 규율하는 것 둘째, 다자간 및 회원국간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능 셋째, 회원국간 무역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GATT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를 표출하였하게 되었다. 즉, 1980년대 이후의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의 핵심인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차별적 지역주의(지역경제협력체)의 강화, GATT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역분야(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의 출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GATT 기능의 한계성 표출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이는 GATT의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촉발시켰으며 1986년 9월에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7년여간의 협상 끝에 1994년 4월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UR협상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19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지난 47년간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해 온 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WTO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도출해낸 새로운 세계 교역규범의 관리를 위해서 출범한 국제기구로 GATT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WTO는 GATT가 포괄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역분야인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을 규범내에 포함시켰으며, GATT체제하에서 용인되어온 무역규제조치들인 섬유분야의 무역규제, 농산물분야의 예외인정, 수출자율규제 등도 자유무역의 틀 속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농산물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적용하여 관세는 물론 수입쿼타제와 같은 많은 무역장벽이 존재해 왔다. 이로 말미암아 사실상 GATT체제밖에 있으면서 GATT규정의 폭넓은 예외를 인정받아 온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 농산물 시장의 왜곡현상을 개선하고 농산물 분야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UR협상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예외를 인정받아온 농업부문을 타부문과 같이 국제규범의 틀 속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 밖에 회원국의 무역관련 국내법, 제도, 관행 등에 있어서 명료성을

제고시키고 회원국들간의 무역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시켜 GATT보다 기능이 강화된 국제기구 형태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WTO 협정은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다자간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역분쟁의 경우 협의, 패널구성, 상소기구 구성, 분쟁해결의 이행, 불이행시의 보복조치 등의 일련의 절차에 대한 시한설정 및 작업절차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기구의 구성은 WTO의 강화된 기능과 GATT와의 차별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 온 GATT에 비해 위상이 제고되었다. GATT는 국제협정에 불과했으나 WTO는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조직과 체제면에서 IMF, IBRD와 같은 국제기구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회원국 수에 있어서도 GATT 47 회원국은 마라케쉬 각료회의 당시에 115개국이었으나 WTO 회원국은 1996년말 현재 127개국으로 증가했으며 가입을 신청한 국가가 28개국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WTO는 GATT의 발전적 해체이며 ITO의 뒤늦은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2. WTO의 기능과 조직

WTO는 WTO 설립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다. WTO 협정문에 나타난 WTO의 설립목적은 보면 첫째, 무역과 경제활동의 상호연계를 통한 회원국들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달성, 상품 및 서비스 생산과 교역 증진 둘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셋째,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 삭감과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 폐지 넷째, UR 협상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자생력있는 다자간 무역체

제 구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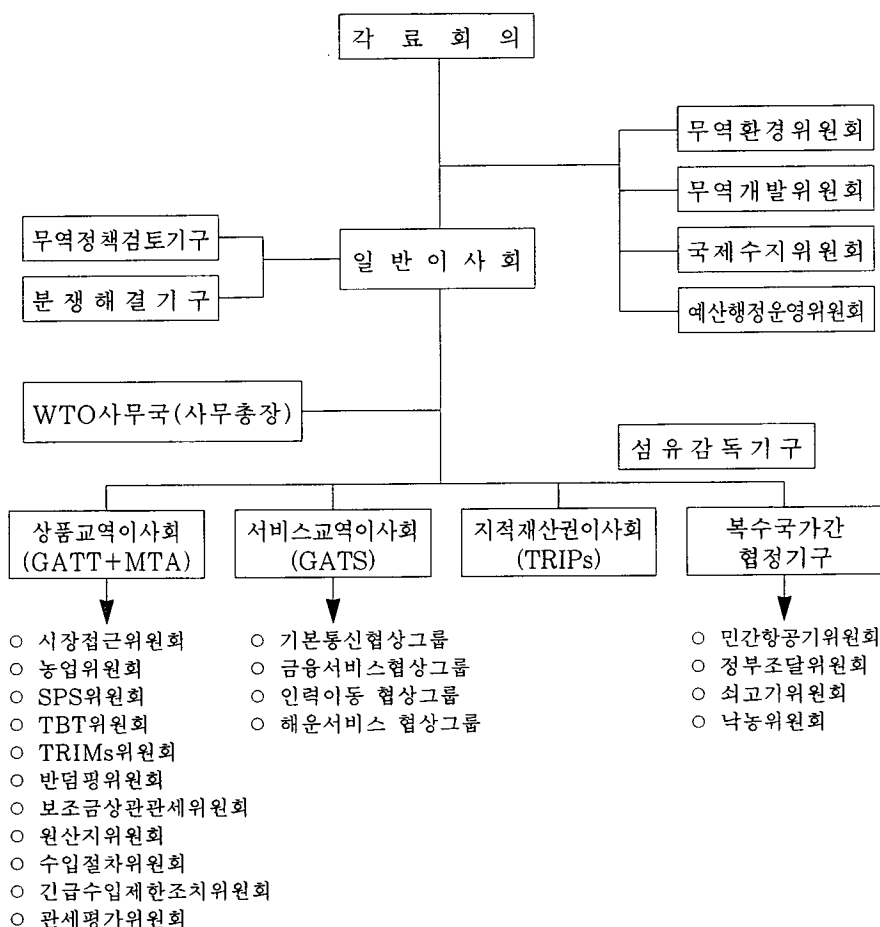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WTO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WTO를 출범시킨 UR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고 각 회원국의 이행내용을 감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UR 농산물 협상의 결과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수출보조의 감축, 국내보조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UR협상에서 합의된 다자간 협약 및 복수국가간 협약의 관리, 국제무역의 동향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검토, 분석, 회원국간 무역분쟁 조정, 해결, 국제교역 및 새로운 통상 이슈에 관한 연구 수행, 다자간 협상의 장 제공,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4인을 포함하여 약45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주로 각국 대표부에 대한 지원, 무역정책 분석, 협정문 해석, 분쟁해결 지원, 미가입국에 대한 가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예산은 1996년의 경우 약 1억 달러로 WTO 총회원국의 과거 3년간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각회원국의 비중에 따라 분담된다(한국은 225만 달러).

WTO 회원국은 1996년말 현재 127개국이며 중국, 러시아, 대만 등 28개국이 가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GATT 회원국이 아니다. WTO협정은 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 및 4개의 복수간 무역협정 그리고 23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방대한 협약의 이행과 강화된 WTO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WTO는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WTO의 조직은 권한과 통제력면에서 피라미드형태를 취하고 있다. WTO 조직의 최상부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료회의 다음 조직으로 일반이사회의(General Council)가 각료회담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반이사회의와 수평적 위치에 있는 조직으로는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TPRB)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가 자리잡고 있다.

일반이사회를 보조하거나 일반이사회 감독아래 운용되고 있는 조직으로는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 등 3개 이사회와 무역환경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다. 상품교역이사회는 교역과 가장 밀접한 조직으로 1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농업위원회도 여기에 속해 있다. 이사회는 두달마다 한번씩 개최되며 농업위원회는 1996년의 경우 4회 개최될 예정이다.

그림 3-1 WTO의 조직



WTO는 이러한 UR 협상결과의 이행을 촉구, 감시하며 각회원국은 이행 결과를 통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UR 협상에서 약속한 무역자유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UR 농산물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합의한 주요 이행의무는 시장접근 기회 확대, 국내보조 감축, 수출보조 감축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통고의무 사항을 WTO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접근기회의 확대는 크게 세가지 분야로 볼 수 있다. 첫째, 관세인하 분야로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10년간 평균 24%(중요한 품목은 낮게, 덜 중요한 품목은 높게 감축할 수 있음) 감축하여야 한다. 두번째로는 현행(또는 최소) 시장접근 물량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쌀의 경우 이행 초기년도인 1995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1%인 5만1천톤에서 시작하여 이행 종료 연도인 200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인 20만 5천톤까지 수입을 늘려야 한다. 보리, 옥수수 등 곡물류와 쇠고기 등 축산물,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에 대하여도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화하여 개방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를 수용하여 관세상당치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방하였다.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보조 총액 1조 7,186억원을 2004년까지 1조 4,900억원으로 13.3% 감축하는 이행 실적을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보조와 관련한 우리의 이행의무는 없다.

3. 주요 활동 현황

WTO의 당면 주요 과제는 UR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서비스협상을 완결 짓는 문제,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신규 회원국 가입 문제, 새로운 이슈들의 WTO 규범과의 조화 문제, WTO와 지역주의의 조화 문제 등이다. WTO는 1995년 출범이후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여 회원국은 127개국

으로 증가하였다(1996년말 현재). UR 후속협상은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서비스(1995. 8. 타결), 기본통신(1997. 2. 연기), 해운(연기), 인력이동(1995. 6. 타결) 분야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UR협상 결과의 이행은 통고의무의 이행, 국내 법률 및 제도의 국제규범화, 시장접근 관련 양허계획의 이행 등 크게 세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통고의무 이행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명성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상품교역분야에만 175개의 통고의무가 있다고 WTO 사무국은 확인하고 있다. 농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관세쿼타 관리 방안, 특별긴급구제제도, 국내보조, 수출보조, 동식물검역, 국영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섬유분야를 제외하고는 통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고된 내용도 불충분하거나 규정의 해석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다. 또한 국내 법규의 국제 규범화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새로운 통상 이슈와 지역주의 문제도 WTO 차원에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원회는 1996년 12월로 예정된 WTO 최상위 조직인 각료회의(2년마다 개최) 준비에 비중을 두어 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농업위원회도 UR 이행과 관련된 분야를 비롯하여 새로운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WTO의 전반적인 동향과 보조를 같이하게 될 것이다.

4. 농업위원회 동향

WTO는 출범 이후 첫해에는 주로 조직의 정비, UR 후속협상의 추진, UR협정의 이행상황 점검 등 UR협상을 종결하고 WTO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출범 2년째를 맞은 1996년은 2년마

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해로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 준비가 가장 큰 과제가 되어 왔다. 그 밖에 30여개국에 달하는 신규가입 신청국에 대한 가입협상도 중요한 업무가 되어 왔다.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1995년에는 주로 각국이 통보한 관세할당량(Tariff Quota, TQ) 관리방안과 특별긴급구제제도(SSG)에 대한 WTO 규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1996년도에 3월과 9월에 개최된 농업위원회에서는 UR 이행과 관련하여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10월과 11월에 개최된 3차-4차 위원회에서는 12월에 개최되는 각료회의 의제 채택과 국내보조 감축 이행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4. 1. 관세할당량 관리방법

TQ 관리방안 가운데 쿼타량을 공매하는 방식은 한국이 처음으로 도입한 뒤에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이러한 방식의 도입을 통보해 온 바 있다. 쿼타 공매제도는 양허표상에 나타나지 않은 추가적인 부가금으로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호주, 뉴질랜드)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은 쿼타 공매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USTR 변호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EU는 동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WTO 법률전문가들도 공매제도의 WTO 규정과의 합치성 여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용에 관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수입권을 생산자 단체에게 부여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의 경우 오렌지를 제주감귤조합에서 수입하도록 한 것과 관련되며, 이러한 문제가 수출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 국가들(미국, 호주, EU)이 있으나 WTO 규정의 위반이 아니라는 우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영무역 형태의 독점 수입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는 캐나다의 버터수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캐나다가 상업적고려에 의해 운영할 것이나 쿼타량의

소진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별 쿼타량 배정문제, 쿼타량을 당해년도에 수입하지 않고 이월하여 이행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4.2. 특별긴급구제제도(SSG)

SSG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뚜렷한 쟁점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SSG 발동을 위한 기준가격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협정문에 제시된 것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시장개방이라는 기본 원칙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유도된 상태이다. 발동가격의 기준 연도와 산출 방식, 자동적 발동 여부 등에 관한 논의에서 기준 연도는 한국의 경우 1988-90 평균을 이용한 것이 농업 협정상의 기준연도 1986-88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충분한 논리와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가 인정되어 이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SG 적용 대상 품목은 관세화 품목임이 재확인되었으며 그밖에 뚜렷한 쟁점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4.3. 식량 순수입 개도국 문제

일부 최빈 개도국들은 UR협상 결과가 자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위원회에서 대상국 선정 문제와 실무준비작업반을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수혜국들은 각국이 자국의 해당 여부를 통보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식량 순수입 개도국임을 밝혔으나 각료회의 결정에 따른 보완조치(원조 등)의 혜택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4.4. 자동협상 의제 논의 동향

UR협상의 종료가 선언된 마라케쉬 각료회의(1994. 4. 15.) 이후에도 UR협상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서비스관련 후속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서비스, 기본통신, 해운, 인력이동 등이 있으며 1996년을

협상완료 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UR 후속협상과는 별도로 UR협상 합의문에 나타난 자동협상 의제(Built-in Agenda)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동협상 의제는 WTO 협정에 포함된 의제로 추가적인 자유화나 협정문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안전들로 자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되는 안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협상 의제에 관한 토의는 UR협상 타결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 관련 자동협상 의제 가운데 농업협정 제20조에 의하면 “개혁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한 협상은 이행기간 종료 1년전에 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농업협정문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추가적인 개방을 위한 협상은 2000년 1월이 되며, 우리 나라의 경우 쌀에 대한 관세화 논의도 이러한 자동협상 안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협상시기 2004년 1월 1일).

자동협상 의제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의제와 향후 협상이 진행될 의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진행중인 의제로는 원산지 규정 협상(1995. 7. ~1998. 7.), 반덤핑 협상(1995. 6. 부터), 서비스 긴급구제 제도(1998. 12. 까지) 등이 있으며 향후 협상이 진행될 부문으로는 농업, 서비스, 지리적 표시, 상계관세 등이 있다. 농업과 관련된 자동협상의제 가운데 통보 및 검토 사항을 제외한 실질적인 협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의제는 지속적인 농업개혁의 진전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정문 제20조, 지적재산권과 같은 성격을 규정하는 지리적표시에 관한 협상(TRIPS 23~24조), 원산지규정 협상, SPS협상 등이다.

자동협상 의제에 관한 논의 시점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2000년초에 시작될 농업분야 재협상의 조기 종결을 위해 1997년부터 준비작업(Work Program)을 하자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한국, 일본, EU, 스위스 등은 이러한 Work Program이 실질적인 협상개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자동협상 의제 가운데 농업부문과 관련이 깊은 의제를 ASEAN이 제출한 비공식문서(Non-

표 3-1 농업 관련 자동협상 의제

의 제 명	해당협정	검토 및 협상 요구사항	시 기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 수입개도국에 대한 개혁계획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각회의의 결정사항 검토	농업협정 (16, 2) 동각료결정(6)	개도국에 대한 식량자원의 계속과 특히 최빈 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에 대한 식량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매 각료회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	'96.12
무역과 환경의 다자간 무역체제조화 검토	무역과 환경 위원회 임무	CTE무역환경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무역조치와 환경조치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다자간무역체제의 이념에 조화되게 협정을 수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첫번째 각료회의에 보고할 의무	'96.12
지리적표시의 검토	TRIPS협정 (24, 2)	TRIPS위원회는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동협정 22조-24조의 운영을 계속 검토하며, 첫번째 검토는 WTO협정발효후 2년 이내 실시	'97. 1
원산지규정조화작업	원 산 지 규 정 협정(9, 2)	각료회의는 관세협력이 사회와 함께 원산지 규정조화작업계획을 WTO협정발효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95. 2)하며, 개시후 3년 이내에 완결	'97. 말
SPS규정의 이행검토	SPS협정 (12, 7)	SPS위원회는 WTO협정발효일로부터 3년후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검토	'98.12
동식물특허대상 검토	TRIPS협정 (27, 3, b)	동식물의 특허보호조항은 WTO협정발효일로부터 매 4년마다 재검토	'99. 1
개혁진전의 계속	농업협정(20)	회원국들은 농업에 있어서 개혁계획의 계속에 대한 협상은 이행기간종료로부터 1년전에 개시할 것에 합의	2000. 1
TPRM 검토작업	무역정 책 검 토 제도(F)	TPRM은 WTO협정발효후 5년 이내에 무역 정책검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동 평가결과를 각료회의에 제출	2000. 1
농업협정계획하의 협상된 약속이행진전 검토	농업협정(18)	농업위원회는 UR개혁에 따라 협상된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을 검토	시한없음 (지속)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보호협상	TRIPS협정 (23, 4)	포도주와 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체제의 수립에 관한 협정이 TRIPS위원회에서 추진	"
국영무역통보 및 역통보사항 검토	1994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5)	1994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라 회원국으로 부터 접수된 통보와 역통보사항을 검토하기위해 상품무역이사회산하에 작업반이 설치됨	"

paper)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표 3-1>과 같다.

5. 전망과 대책

5.1. 전 망

우루과이 라운드의 종결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라운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이러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개도국들의 반발로 새로운 출범한 WTO 체제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할 수도 있으나 이들 새로운 이슈들은 WTO 출범 이후 논의되고 있는 UR협상 결과의 가속화 및 지속적 개혁 논의와 함께 WTO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향후 새롭게 형성될 국제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논의에 대한 이해와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정문의 이행은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점차 협정문의 해석과 관련된 까다로운 문제로 이전되어갈 전망이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증가될 전망이다. 첫째, 협정문과 국별 이행계획서의 해석상 모호한 점 둘째, 관세 할당량의 할당과 수출보조금의 배분 방법 셋째, 시장접근·국내보조·수출 보조간 비대칭적 규칙(예, 삭감폭과 기준연도가 다른 점, TE 계산과 AMS의 참조가격 상이 및 Special safeguard 조항 발동시 다른 참조가격 사용 가능) 등이다. 농업개혁의 지속과 관련된 협상은 국내보조 문제, 고율 관세 문제, 예외 조항의 지속성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자동협상 의제는 협상의 시기문제를 놓고 케언즈 그룹을 비롯한 수출국

들과 한국, 일본 등 수입국들의 입장이 대립한 반 있다. 1996년 4월에 열린 APEC 무역투자위원회에서도 APEC의 입장을 논의하였으나 선진국들의 UR협정의 조기 이행(가속화) 주장에 대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자동협상 의제는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 섬유 및 의류 분야 등 타부문과도 관련되어 있어 타부문과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결국 이번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일부 케인즈그룹 국가들의 조기 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에 나타난 일정을 따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5.2. 대 책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조정비용을 감소시키고 관련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협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행정은 일반 행정직을 중심으로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분야에서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통상 및 협상 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통상협상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또한 자유무역체제를 선도하고 있는 WTO에 적극적 참여함하여 정보수집과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가간 쟁점에 대한 논의 수준을 향상시켜 각국 정책의 다자적인 평가를 가능케하는 제도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WTO 협정은 매 3년마다 협약의 운용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이를 수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WTO 사무국에 한국의 전문가 참여 확대 (현재 4명만이 참여)도 커다란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논의에 대응하고 입장이 다른 선진국과의 양자협상 병행으로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자유화 추진은 금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대략적인 방향과 의제가 결정된 바 있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자동협상 의제 조기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타부문과 일관성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일단은 우리의 의도대로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협상을 위해서는 의제별로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의제별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쌀 관련 재협상

- ① 재협상 시기: 농업협정문 부속서 Section B 제8항에 의하면 “Any negotiation on in paragraph 7 shall be initiated and completed within the time-frame of tenth year itself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협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개시되고 또한 종료되어야 함.

②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 물량 증대의 손익 분석

- 관세화를 수용하고 추가적인 MMA 물량의 증가는 현재수준 (0.25~0.5%)을 유지하는 방안과 둘째, 관세화를 수용하지 않고 MMA 물량을 증가시켜 주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필요
- OECD 가입 이후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 매년 UR 협상에서 일본에 적용된 증가율(0.8%)을 적용 받을 가능성을 감

안한 상기 대안 검토 필요

- 관세화에 따른 손익분석

- 쌀에 대한 관세상당치(TE)는 UR협정문에 근거하여 1986~88 기준으로 계산하면 505%(한국의 이행계획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UR 논의 당시의 시산결과임), 한국이 제출한 AMS에 근거하면 701%, Frontloading에 근거하면 898% 수준임.
- 이러한 관세상당치를 인정받을 경우를 고려한 MMA 물량의 증량과 관세화의 장단점 분석

③ 관세화시 품질계수를 무시한 고율관세 적용 가능성

- UR 농업협정문 부속서5 첨부서 제5항은 “The initial tariff equivalents may be adjusted, where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differences in quality or variety using an appropriate coefficient,”라고 규정되어 있어 품질과 품종의 차이를 고려하여 관세상당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첨부서 제7항은 “Where an adjustment is made to the level of a tariff equivalent which would have resulted from the above guidelines, the Member concerned shall afford, on request, full opportunities for consultation with a view to negotiating appropriate solutions,”라고 규정하여 제시된 관세상당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과의 협상이 불가피할 수 있음.
- UR협상시 이행계획서는 다수 회원국들의 다수 품목에 대한 TE 제출로 품질계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그러나 재협상에서는 우리 나라의 단일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해 당사국과 분쟁의 가능성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이 요구됨.

④ 일본의 재협상이 우리 나라보다 앞서는 점을 감안하여 관세율 계산 등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본과 공조체제 유지

2) 추가 자유화 및 국내보조 감축

-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감축, 국내보조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법규의 정비.
- 우리 나라의 통합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인 대부분의 곡물류가 관세화되어 매우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고율 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최고 한도 제한, 급속한 감축 등 일부 수출국들의 의견이 차기 협상에서 강력하게 제기될 경우에 대비한 협상 방안 수립
- 경쟁력 확보 품목, 구조조정에 의한 탈락 품목 등을 선정 대비
- 협정문 6조와 부속서 2를 원용한 허용대상 국내보조는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
- 국내보조에 대한 이행점검 증대 전망

3) 지리적표시 협상 대비

-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초하는 경우 지적재산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표시를 인정하는 제도이나 이는 국내제도와 국제규범이 일관성있게 시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표법, 원산지 표시제도,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들의 개정과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요구됨(고려인삼, 김치, 순창고추장 등).
- TRIPs 규정의 대상, 운용방법 분석
- 국내 지리적표시 대상품에 대한 실태파악과 선정
- 국내법규의 정비

4) SPS규정의 이행검토

- 향후 있을 SPS규정의 이행검토에 대비하고 위생 및 검역조치가 교역에 규제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역상대국이 이익을 제기할 경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① 검역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제기구의 위험평가에 대한 세

부기준 정립에 맞추어 자체모델 수립 및 전문가 양성, 지역개념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에 대비하여 근거 마련, 식용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 규정정비

- ② 위생 및 검역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과학적 근거에 의한 처리방안 강구: 조직인력의 보강 및 시설장비의 확충, 정보체제의 확충, 샘플수량의 적정화 등 검역절차의 개선
- ③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물 검사기능의 강화: 가축방역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국내 병해충 발생 및 분포 정밀조사, 농약잔류검사확대

5) 원산지규정 조화작업

-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다자간 협상의 시험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WTO에서 지역주의의 구체적인 원산지규정이 반영될 가능성이 큼.
- 협정상의 원산지규정은 선언적인 원칙을 정립하고 원산지규정의 구체적인 효과는 개별품목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이 작성될 부속서에 크게 의존할 것임. 기존의 EU, NAFTA 등 지역협정에 근거해 작성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을 품목별로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됨. 향후 농업관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경우 외국산 원료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

제 4 장

APEC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1. 서 론

1967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기업인과 금융인 그리고 학자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 협력 협의체(Forum)인 태평양경제협력회(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PBEC)와 여기에 정부 관리들까지 참여하여 1980년 설립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ECC)를 모태로 하여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는 각국의 국내 경제 문제를 협의하고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단순한 상호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매년 한차례씩의 각료회의를 거치면서 점차 국제기구로서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지만 APEC이 본격적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경제 협력과 교역 및 투자 자유화 문제를 다루면서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93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주도로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11월, 7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소모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연합

(EU)과의 팽팽한 견해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UR 협상에 EU의 성의 있는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단합을 과시하고자 한 미국의 전략은 상당한 정도로 적중하여 그 해 UR 협상의 타결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APEC은 이를 계기로 지역주의(Regionalism)로 탈바꿈하였고, 새로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정립은 물론 회원국간의 경제 협력과 무역 및 투자의 확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94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의는 이른바 ‘보고르 선언’을 통해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시한을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³⁾. 각국의 정상들은 또한 ‘예외없는 자유화’에 합의하는 한편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구체적 일정은 1995년 일본과 1996년 필리핀에서의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1995년 일본의 오오사카 정상회의는 다섯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고위실무회의(SOM)”을 개최하여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의 예외 허용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포괄성의 원칙(Comprehensiveness)’과 함께 ‘신축성의 원칙(Flexibility)’을 포함하는 ‘오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을 채택하여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일반 원칙과 윤곽 및 분야별 달성 목표를 명시하였다⁴⁾. 동시에 경제 및 기

3) 보고르 선언문(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of Common Resolve, Bogor, Indonesia, November 15, 1994) 제6항, 어명근, 김동민(1995) 부록 참조.

4) 오오사카 행동지침(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the Bogor Declaration)은 제1부 자유화 및 원활화(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와 제2부 경제 및 기술 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으로 구성되며 제1부는 다시 제1장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제2장 자유화 및 원활화의 기본 구조(Framework for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제3장 분야별 행동(Actions in Specific Areas)으로 이루어지며 ‘포괄성의 원칙’과 ‘신축성의 원칙’은 제1부 제1장 일반원칙의 제1항과 제8항에 각각 명시되어 있음.

술 분야의 협력 사업을 강화할 것도 아울러 결정하였으며 또한 ‘보고르 선언’의 세부적인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은 다음해인 1996년 필리핀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의 필리핀 정상회의는 역시 네차례의 “고위실무회의”를 통해 각국이 제출한 무역·투자자유화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국별 형평성과 투명성 등에 입각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마닐라 실행계획(MAPA)’으로 확정하였다⁵⁾. 이 실행계획은 1997년 1월 1일부터 이행을 개시하게 된다. 따라서 동시에 이행을 개시하되 자유화 이행의 속도는 국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오오사카 행동지침상의 ‘포괄성의 원칙’과 함께 ‘신축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APEC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문제는 논의 단계를 넘어 실천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1993년의 UR 협상 타결 이후 우리 나라와 관련된 무역·투자자유화 문제를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였던 APEC 무역·투자자유화 과정에서 농산물 무역에 관한 사항은 몇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부각시킨다. 하나는 오오사카 행동지침에 명시된 무역·투자자유화의 일반원칙중 “각 회원국의 특수한 사정을 자유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신축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일견 “예외없는 자유화”를 의미하는 ‘포괄성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포괄성의 원칙’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각 회원국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예외없이 자유화하되 타의에 의해 획일적, 강제적으로 자유화하는 대신, 각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고유한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자국의 사정에 맞추어 자체 계획에 의해 점진적, 장기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역

5) ‘마닐라 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of APEC: MAPA)’은 ‘공동 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과 ‘국별 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실행계획은 분야별로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에 비해 국별 실행계획은 각국별, 분야별로 작성되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3절 참조.

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두 번째 측면은 대만과 일본 및 우리 나라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들을 중심으로 APEC에서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또는 적어도 관심을 다른 분야로 분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1994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회담에서 대만이 제안하여 이듬해인 1995년 2월 후쿠오카 '고위실무회의(SOM)'에서 승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농업기술 협력회의(ATC)가 그것이다.

당초 대만이 제시한 농업기술 협력회의(ATC)의 목적은 회원국 농업의 발전 수준과 구조 및 경제에서의 비중이 각기 다른 점을 감안하여 농업생산 및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부문에서의 협력을 통해 무역 및 투자협력이라는 APEC의 장기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내 농업기술협력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둘째, 협력 메카니즘에 대해 의논하며 셋째로 의제별 추진방안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고위실무회의(SOM)'에 추천할 수 있도록 확정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각국의 입장 발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PEC의 18개 회원국이 농업이라는 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개회 이전부터 미국과 뉴질랜드를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간사국인 대만과 이를 지지하는 우리 나라 및 일본과 논란을 벌였다.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세 번째 현안은 역내 식량 수급문제이다. 이미 오오사카 선언문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모든 회원국들이 역내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소득 수준의 급속한 성장이 식량 수급, 에너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합심,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⁶⁾. 그에 따라 1996년 5월 제2차

“고위실무회의”는 경제위원회(EC) 산하에 식량작업반(Task Force on Food: TFF)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8월의 제3차 “고위실무회의”에 앞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10월에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식량작업반의 설치 목적은 APEC 역내의 식량 문제를 연구, 검토함으로써 장래에 당면하게 될 식량위기를 다루는 공동 실행계획을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 범위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역내 식량 수급에 미친 효과(생산, 기술변화, 교역, 재고, 가공 및 유통)를 분석하고 식량과 환경간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며 사례 연구를 통해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여 공동 실행계획을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는 것이다.

당초 이 작업반을 설치하자는 제안서는 일본과 호주가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 안은 식량 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국이 국내 생산을 유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농산물 수입의 추가적 자유화 압력을 막아 보려는 목적이 있었던 반면에 호주 안은 완전하고 철저한 자유무역과 농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철폐에 의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 작업반의 설립 취지, 작업 분야, 작업 기간, 분야별 간사국 지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의 보기가 어려웠으나 활발한 사전 접촉을 통해 양국의 견해를 절충하는 형식으로 타결을 보게 되었다.

1996년 10월 개최된 식량작업반의 제2차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가 호주와 함께 첫 번째 작업 분야인 식량 수급(생산, 소비, 교역 및 재고)분야의 공동 간사국에 선출되어 향후 수년간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 그리고 기술 진보 등이 각종 식품의 생산, 소비, 교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량작업반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와 호주의 분석 결과는 향후 역내 농산물 무역자유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6) 오오사카 선언문(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for Action, Osaka, Japan, November 18, 1995) 제9항 참조

된다.

이 장에서는 WTO 출범 이후 가장 활발하게 무역자유화를 논의하는 APEC에서의 논의 동향을 UR 이행의 점검과 가속화, 그리고 후속협상의제(Built-in-Agenda)와 관련된 WTO 체제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후 1996년 11월 발표된 마닐라 실행계획(MAPA)을 공동 실행계획(CAP)과 국별 실행계획(IAP)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어서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쟁점 사항으로 농업기술협력회의(ATC) 및 식량작업반(TFF)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 검토하여 향후 농산물 무역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WTO체제에의 기여

2.1. UR 이행 점검 및 가속화

1993년 UR 타결 이전에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의 주요 목적이 UR 협상의 타결에 있었던 반면 그 이후에 열린 세차례의 APEC 정상회의들은 모두 UR 협상의 이행을 철저히 하고 완료 시기를 앞당겨 이행을 가속화함으로써 WTO 체제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해 역외국들과의 무역도 자유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개최된 1994년의 제2차 정상회의는 현재의 보호 수준을 높이거나 새로운 규제를 하지 않는 동결조치(Standstill)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교역의 혜택이 소비자와 기업에 귀착될 수 있도록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의 원활화(facilitation)를 강조하는 한편 관세, 표준, 투자 및 시장접근에 대한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APEC 차원에서 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UR 협정의 이행을 가속화(Acceleration)하고 UR 협정 이행의 결과를 심화 및 확대(deepening and broadening)시키기로 결의함으로써 APEC이 UR과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UR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1995년 일본의 오오사카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관세인하를 앞당기고 UR 협정을 조기 이행하는 이른바 초기 가시화 조치(Downpayment)와 함께 규제 완화 및 통관절차의 조화 등 무역원활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이 1996년으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고 WTO내에서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모색할 것과 APEC 규정과 WTO 규정과의 일치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996년 필리핀 마닐라 정상회의에서는 4차에 걸친 “고위실무회의”를 통해 협의한 ‘마닐라실행계획(MAPA)’에 “UR 이행”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각국의 이행 현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UR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세, 비관세 장벽, 분쟁 조정,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SPS/TBT 규정 등 WTO의 제반 규정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멕시코에서 UR 농산물협정 세미나와 마닐라에서 SPS/TBT 관련 세미나, 그리고 중국에서 WTO 반덤핑 협정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기술적인 지원 방법을 논의하였다. 한편 1996년 뉴질랜드 Christchurch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APEC 차원에서 WTO 체제에 기여하기 위해 UR 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과 WTO의 새로운 자유화 계획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2. 후속협상 의제(Built-in-Agenda)

APEC 차원에서 WTO 체제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 7월에 열린 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WTO 농산물 협정의 후속협상 개시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뉴질랜드는 후속협상이 UR 협상처럼 7년 반이라는 오랜 기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작업(preparatory work)을 조기에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일본은 농산물 협정의 후속협상 개시 시점이 UR 협정

문에 “UR 협정 이행의 완료 1년전”인 1999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협상의 일종인 준비작업도 그 이후에 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미국의 중재로 의장인 뉴질랜드의 의견서 문안을 ‘준비작업’ 대신 ‘추가작업(further work)’으로 수정하였다. 의장의견서(Statement of Chai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UR 후속협상 의제는 1996년 12월로 예정된 제1차 WTO 각료 회의(싱가포르)의 중심 과제이며 특히 농산물, 서비스, 섬유,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투자 및 경쟁정책은 추가적 협상이 필요한 과제이다.” 둘째, “비특혜적 원산지 규정과 정부조달 서비스 등 일부 분야는 이미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다른 분야는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따라서 후속협상 의제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고 기존 협의체나 기구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후속협상을 위한 추가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APEC 통상장관 회의의 의장의견서가 1996년 12월로 예정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경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3.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행계획(MAPA)

3.1. 개 요

선진국은 2010년까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7)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추가적인 작업이란 분석과 정보 교환의 과정으로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회원국들의 쟁점을 이해하고 각국의 관심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의 자유화를 완료한다는 보고르 선언은 1995년 오오사카 행동지침(OAA)을 통하여 이행상의 일반원칙과 기본 구조, 그리고 15개 분야별 달성 목표 등 지침이 확정되었고,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은 1996년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마닐라 실행계획(MAPA)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각국은 이 실행계획에 의거 1997년 1월 1일부터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닐라 실행계획은 APEC이 창설된 이래 1996년 11월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대하여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동 실행계획(CAP)과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할 국별 실행계획(IAP)으로 구성되는 마닐라 실행계획은 관세(Tariff),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 서비스(Service), 투자(Investment), 표준 및 적합성(Standard and Conformance), 그리고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비롯한 15개 분야별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 실행계획은 APEC 산하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국이 합의한 양식을 분야별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명시토록 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선 공동 실행계획을 기간별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국별 실행계획(IAP)은 일정한 양식이 없이 각국이 자발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포괄성’ 및 ‘신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15개 분야별로 2010년 혹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완료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국별 자유화 추진 속도와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간의 ‘고위 실무회의’를 통해 국별 형평성과 자유화 정도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1989년 APEC 창설이래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역내 외에서 자유화의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

었다. 선진국과 후진국, 동양과 서양, 식민지와 피식민국 등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이질적이고 다양한 국가간의 협력체인 APEC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으며 완전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닐라 실행계획은 이행 개시를 불과 한달 여 앞둔 시점에서 합의를 보았다는 점 때문에 일단 18개 회원국들이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향하여 첫발을 딛는 계기라는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다른 지역통합체와 같이 배타적이거나 내부지향적이 아닌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향하는 전 세계적 자유 무역의 확대라는 목표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상호간의 협의(Consultation)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하는 의사결정 방식(Modality)을 도입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소모되기는 하였으나 다자간 국제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2. 공동 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

공동 실행계획의 매트릭스 형식은 그 동안 개최된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각국이 상호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996년 5월 세부(Cebu)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후 각국의 재확인을 거쳐 확정되었다. 공동 실행계획은 오오사카 행동지침(OAA)에 포함된 분야별 공동 조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 실행계획(CAP)에서는 오오사카 행동지침상의 공동조치를 목표(Objectives)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기, 중기 또는 장기와 같은 시간대(Timeframe)에 따라, 혹은 이행이 완료되는 년도별로 표시하였다. 15개 분야별 공동 실행계획중에서 농업 부문과 관련된 분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관세(Tariff) 분야

관세 분야 공동 실행계획의 목표는 전산화된 관세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세가 점차 감축될 경우 교역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부문, 즉 ‘우선 산업부문’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모든 회원국은 동일한 매트릭스 형식을 갖는 일련의 실행조치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관세 분야의 추가적인 공동 실행계획은 기존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국별 실행계획 이행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관세 분야 공동 실행계획의 주요 이행 일정은 1997년까지 APEC 회원국들에 대한 실행관세의 데이터베이스를 APEC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1999년까지는 ‘우선 산업부문(priority industry sectors)’의 목록을 APEC 각료회의에 제출하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부표 참조)

3.2.2.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 분야

비관세 조치 분야 공동 실행계획의 목표는 회원국들이 비관세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목록을 편찬하고 관세 분야에서와 같은 ‘우선 산업부문’ 목록의 작성에 착수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보조금에 대한 정보교환과 이들의 점진적 감축 및 폐지를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수출금지에 관한 대응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다.

비관세 장벽 분야의 주요 이행 일정은 1998년까지 비관세 장벽으로 인정되는 조치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1999년까지는 각료회의에 ‘우선 산업부문’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부표 참조)

3.2.3. 표준 및 적합성(Standard and Conformance) 분야

표준 및 적합성 분야의 공동 실행계획은 무역자유화 및 확대라는 APEC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실제로 모든 회

원국들이 '표준 및 적합성 소위원회(SCSC)'의 목표인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요건의 투명성, 자발적 및 의무적 표준의 일치, 적합성 검정의 상호 인정, 그리고 기술적 하부구조 개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약속하였다. 공동 및 특수 조치는 투명한 표준, 단순화된 적합성 평가 절차, 그리고 기술 협력과 원조계획으로 인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주요 일정은 2000년/2005년까지 가전기기와 식품라벨링, 그리고 기계류 등 선도 부문에 대한 회원국 표준을 국제 표준과 일치시키고 1996년에 회원국 표준을 국제 표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APEC 지침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 장비 등의 부문은 ISO와 IEC 등 국제 표준화 기구의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 표준에의 일치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식품의 적합성 검정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약과 완구류 안전에 대한 정보 교환 협정을 1996년중에 완료한다. 그 밖에 1996년부터 시멘트 등 건축재를 비롯한 규제 부문의 상호 인정협정(MRA)을 추가할 분야를 고려하고 자발적 부문의 상호 인정 협정 네트워크를 구축, 참여하게 된다. 또한 2000년까지의 중기(Mid-term) 기술 하부구조 개발 계획에 착수하며 WTO TBT/SPS 협정에 대한 세미나와 제1차 APEC 표준 및 적합성 회의를 각각 1996년 5월과 10월에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측정 표준, 실험실 운영 및 인증, 검사기관과 품질 인증제도 및 공인기관 인증 등을 위한 기술적 하부구조 개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및 적합성 분야에 대한 '진보를 위한 동반자(PFP)' 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997년까지 회원국 표준과 적합성 사정 요건의 투명성과 접근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환경 관리 표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3.2.4. 통관 절차(Customs Procedures) 분야

통관 절차 소위원회(SCCP)에서 무역투자위원회(CTI)에 보고할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매트릭스 양식은 목표일자 또는 이정표, 법적 골격, 하부구조,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원조 등 공동 실행계획의 이행 일정표를

포함하고 있다. 공동 실행계획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고 조화시킨다는 오오사카 행동지침상의 목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SCCP의 지도원칙인 원활화, 신뢰성, 일관성 및 투명성에 따라 작성되었다. 실행계획은 각국이 취해야 할 주요 행위와 현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행위는 공동 실행계획별 의장 및 공동 의장 지원국에 할당된 기술 원조와 인적 자원 개발의 골격을 준비하는 일을 포함한다. 이들은 제공된 원조를 분류하고, 다른 기관과 협조하며, 원조계획을 마무리하고 인적 자원 개발 활동의 일정을 잡는 등 원조의 실제 시행(전문가 파견, 훈련, 세미나와 연찬회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준비를 한다. 활동 기금은 APEC 중앙 기금과 SCCP 회원국 및 다른 국제기구들로부터 출연된다.

통관 절차 분야의 주요 일정은 먼저 1996년에 WCO 조화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최소한 6자리 수준까지 APEC 회원국들의 관세 분류법을 조화시키며 제4차 APEC 통관산업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관과 민간 부문이 심포지움과 전람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대화와 정기적인 협의의 기회를 제공한다. 8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컴퓨터 응용시스템에 관한 세미나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9월에는 중국에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1997년에는 회원국들이 2000년까지 WTO 통관 평가협정에 일치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기술 원조 계획을 수립하며 1998년까지 통관 정보를 공공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1999년까지 EDIFACT를 통해 APEC 통관 절차를 전산화하며 2000년까지 전체 APEC 지역에 선진 관세 분류 기준을 도입한다.

3.2.5.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야

지적 재산권 분야의 공동 실행계획은 각각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서로 다른 3단계의 시간대로 구성된다. 공동 실행계획의 이행은 일곱개 공동 조치별 선도 국가들의 주도하에 이미 개시되었다.

주요 일정은 1996년 8월 국별 지적 재산권 접촉 창구 목록(Contact

Point List)을 완성하여 1997년 1월 APEC 사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996년 8월 도쿄에서 열린 APEC 산업 재산권 심포지움을 포함한 여러가지 연찬회와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또한 1996년에 회원국별 국내 지적재산권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고 APEC 회원국들 사이의 상표 등록제도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상표제도에 대한 현황 연구를 실시한다.

1997년에는 역내에서의 유명 상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교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명 상표에 대한 현재의 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을 시작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 시행 제도에 관한 연구를 1997년에 매듭지어 시행의 지도 원칙과 관련된 현안들을 고려하며 1996년과 1997년에는 각 회원국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이행에 대한 정보 교환이 있고 그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1997년중에 “산업 재산권 관련 PFP 사업”에 대한 첫번째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부 내용은 부표 참조).

3.2.6.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분야

모든 회원국들은 이미 진행중인 비특혜적 원산지 규정의 조화 작업에 참여하여 그에 따라 합의된 규정에 동의하기로 약속하였다. 각국이 설정한 교역 목적에 따라 종종 다르게 형성되는 잡다한 원산지 규정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교역을 왜곡시킴으로써 원료를 사용하는 생산의사 결정을 복잡하게 하였으며 또한 국가간 갈등을 유발하였다.

주요 일정은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96년에 원산지 규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1997년에는 두권으로 이루어진 APEC 역내국들의 특혜적 및 비특혜적 원산지 규정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할 것이다. 그 밖에 단기적 계획으로는 회원국들이 WTO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통고의무 등 절차적 의무의 준수 여부와 비특혜적 및 특혜적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대한 평가를 이행하고 비특혜적 규정의 조화를 위한 WTO/WCO의 작업을 촉진, 보완 및 가속화하는 일이 포함된다.

다. 장기적으로는 원산지 규정 관련 관행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양상과 효과를 식별함으로써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미치는 의미를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한다.

3.2.7. 분쟁 조정(Dispute Mediation) 분야

외국 기업간의 거래에서 오해와 마찰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마련이며 이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들에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회원국들은 WTO 분쟁해결기구를 최상책으로 지지하면서도 APEC 역내에서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 관련 분쟁의 조기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기존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일정은 1997년까지 회원국이 당사자로 연루된 분쟁해결기구(중재, 화해 및 조정)에 대한 목록을 출간하여 기업 부문이 개인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APEC 차원의 분쟁완화 서비스를 구축하고 무역정책대화(Trade Policy Dialog)와 같은 APEC 협의체 내부에서 오해를 식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화체계 활용을 모색한다.

3.2.8. UR 이행(Implementation of the UR) 분야

UR 이행 분야의 공동 실행계획에서는 단기적으로 회원국들의 UR 협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TRIMS, SPS, TBT,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 UR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UR 이행 세미나 참석을 권장한다 (예: UR 농산물협정 (멕시코), SPS/TBT(마닐라), WTO 반덤핑협정(중국)).

단기적 및 계속 추진사업으로서 먼저 UR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술훈련 사업 등 기술적 원조를 WTO 사무국 등 관련 기구와 협조하여 이행한다. 단기 및 중기 계획으로는 UR 이행세미나를 계속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UR 이행의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기적 세미나를 검토한다.

또한 매년 APEC 회원국들의 UR 이행 보고서를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업계에 제공한다. 이때 이행과 APEC 자유화간의 관계가 UR 협정의 이행이 WTO에서 추진중인 작업과 상호 중복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될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UR 협정에서 이행될 경우 하부구조 발전 등 APEC 공동 목표를 신장시키는데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조항을 선별하고 회원국들이 이러한 조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선정한다.

3.3. 국별 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

국별 실행계획(IAP)은 모든 회원국들이 2010년 혹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일정표를 15개 분야별로 작성, 제출하여 1996년 APEC의 의장국인 필리핀에서 개최된 네차레의 SOM 회의를 통해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1996년 5월 필리핀의 세부(Cebu)에서 개최된 제2차 SOM에는 18개국 전문가가 개별 실행계획의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8월의 다바오 제3차 SOM에서는 7월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 보고된 지침에 따라 형식(Format)과 내용(Substance)을 변경, 보완된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통상장관회의는 개별 실행계획이 투명성(Transparency), 형평성(Comparability) 및 역동성(Dynamism)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회원국들은 개별 실행계획의 보고 형식을 표준화하고 공동 참고사항(Common Reference Points)을 채택하였으며 명료성을 높이고 현재 입장과 시간계획(Timeframe) 및 대상범위(Coverage)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였다. 실행계획이 성격상 가변적(Rolling Nature) 특징을 갖고 APEC 자유화 과정이 보고르 선언의 달성을 위해 유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은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실행계획의 목표는 UR 협정에서 양허된 정도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특히 관세, 비관세 조치, 서비스, 표준 및 적합성, 통관 절차

차, 원산지 규정 및 규제 완화 등의 분야에 대한 자유화와 원활화 조치를 망라한다. 더욱이 APEC은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상 환경 하에서는 합의하기 어려운 일방적 자유화 조치를 도출함으로써 전 세계의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 협정 등 다른 국제 협정에서 자유화한 범위 내로 자유화 정도를 국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 협의 및 SOM에서의 협의도 피상적으로 진행되어 1996년 11월의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개별 실행계획은 각 회원국이 제출한 최종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상태이다. 주요 국별 농업 관련 분야의 개별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4-1 관세(Tariff) 분야 개별 실행계획

미 국	일 본	캐 나 다	호 주
〈1996년 현재〉 - 평균관세율: 3.4% - 농산물관세율: 1.9% - 무관세 비율: 18.8% (농산물: 22.7%) 〈목 표〉 1. 점진적 관세 감축: UR 협정에 따라 MFN양허 관세 감축 ○ 2000년 까지 - 평균관세율: 2.7% - 농산물관세율: 1.4% - 무관세 비율: 35% (농산물: 34.4%) 2. 투명성 제고 ○ USITC에서 매년 조화된 관세율표 발간 및 인터넷에 게재 ○ APEC 회원국 상호 간 관세 및 무역자료 컴퓨터 판독 형태로 전환 및 교환 제의	〈현황:1993년〉 - 공산품: 2.2% - 수산물: 5.7% - 임산물: 1.4% - 농산물: 11.9% 〈2000년까지〉 - 공산품: 1.5% - 수산물: 4.1% - 임산물: 1.0% - 농산물: 9.3% 〈2010년까지〉 오사카 행동지침에 의거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	〈현 황〉 - 평균관세율: 1.6% - UR협정으로 공산품 관세율 4.8% - MFN 비율: 99.7% 〈1999년까지〉 - 714개 품목 관세 인하 〈2004년까지〉 - 64개 품목 관세 인하	〈현 황〉 - 1996년 평균관세율: 5%(섬유, 의복, 자동차, 설탕, 채소 제외) - 무관세 비율: MFN의 40% 〈2001년까지〉 - 평균관세율: 4.8% - 회원국들의 이행 여부에 따라 0%-5%의 관세 부과 예정 - 설탕: \$55/T - 치즈(톤당): \$96(쿼타내), \$1,220(쿼타초과물량) - 채소류: 5%

표 4-2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 분야 개별 실행계획

미 국	일 본	호 주	뉴질랜드
〈현 황〉 - 쿼타, 부과금, 긴급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수출금융 등 미 실시 - 건강, 안전, 환경보호 위한 비관세조치만 국제적 협정의 범위내에서 허용 〈목 표〉 - 비관세조치의 점진적 감축 - 농산물 수출보조: WTO농산물 협정 및 이행계획서에 의거 점진적 감축 - 섬유류 쿼타: WTO 섬유 및 의류 협정에 따라 2004년까지 폐지 ○ 투명성 증대 - 비관세조치의 WTO에 대한 통고 의무를 완전 준수 〈중 기〉 - WTO 농산물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	〈현 황〉 - 농산물 수량제한 철폐(단, UR 농산물 협정의 "특별취급" 조항은 예외) - '95년 현재 수입쿼타 품목: 65개 〈단기:2000년까지〉 - WTO 협정에 의거 수입쿼타 금지 〈중장기:2010년까지〉 - 일체의 비관세조치 불허	〈현 황〉 - 위생 및 안전 목적 외의 비관세 조치 철폐 및 제한 - 치즈만 관세할당량 (tariff quota) 적용	〈현 황〉 - 위생 및 환경보호 목적의 비관세조치 제한 (SPS/TBT) 〈목 표〉 -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조치와 조선, 컴퓨터, 책 및 기계류에 대한 보조금 등 비관세 조치 점진적 철폐

표 4-3 표준 및 적합성(Standard and Conformance) 분야 개별 실행계획

미 국	일 본	캐 나 다	호 주	뉴질랜드
- 식품라벨링의 국제표준과 일치	- 5가지 농약의 잔류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	- 식품라벨링 등 식품분야 국제표준과의 일치 및 조화 에 적극 참여	- 공동조치 분 야 및 그 밖 의 분야에서 국제표준과 일치 추진	- 동식물 검역 의 투명성 위 해 D-base 구축
- WTO/TBT 협정국들과 상호인정 협 상 제안 예정	- 외국시험자료 인정 법안 입법	- ISO, Codex 참여	- APEC 회원 국들과 양자 간 상호인정 협정 추진	- 동식물 수출 요건에 관한 D-base 구축
- 기술적 인프 라 개발 원조 긍정적 검토	- 기술적 인프라 개발 관련 인 력 훈련 계획	- 상호인정 시 범사업(땅콩): 기술적 규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자발적 분야 에서의 상호 인정협정 발 전 위해 호주 의 기술적 하 부 조직 참여 촉진	- 2010년까지 5000개의 표 준을 호주와 공동 표준화
- SPS/TBT에 서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 성 유지	- SPS/TBT의 투명성 위해 농림수산물내 에 JAS 위한 안내소 설치 예정		- 기술적 인프 라 개발 위한 중기 프로그램 재원 마련 고려	- 1997년까지 미국, 캐나다 와 어류 및 연체패류 적 합성 시험 결 과 상호인정 협정 체결
				- EU와 생동 물 및 축산물 무역 위한 수 의 협정 체결
				- 한국, 말레이 시아, 필리핀 과 시험소 인 증기관 상호인 정 협정 체결

표 4-4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야 개별 실행계획

미 국	일 본	캐 나 다	호 주	뉴질랜드
〈현 황〉 - UPOV 및 WTO/TRIPs 가입. NAFTA 제17장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조인 〈향후 목표〉 - 향후 지적재산권 강화 노력- 상표법 조약 수 준의 보호 - 행정체계 간소화 및 표준화-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조치 협조 희망 - 쌍무적 기술협력 확대	〈현 황〉 - 지적재산권 보호 역사 100년 이상이며 보호 수준 향상 - 상표법, 특허법, 종자 및 채종법, WTO/TRIPs 및 UPOV 가맹국 - 일본-ASEAN 심포지움 등 기술협력 〈단기: 2000년〉 - 특허청 기능 강화, TRIPs 수 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 재산권 기술 협력, 식물종자 보호체계 강화 - 1997년 UPOV 회장국 〈중장기: 2010년〉 - 국제적 조화 도모	〈현 황〉 - UPOV, WTO/TRIPs 및 NAFTA 제17장 조인 - 1996년 1월 1일 WTO 이행 법안 지적재산권 조항 발효: TRIPs 이행 완료 〈실행계획〉 - 로마협약의 저작권 법안 준비 - 특허법 개정 하여 WIPO 가입 - CIPO 주관 기술 협력	〈현 황〉 - TRIPs 규정 이행위한 법제, 행정적 준비 - 인적 자원 개발, 지적재산권 중요성 인식, 저작권 보호위한 기술 공여 〈실행계획〉 - 현행 규정에 부응하는 지적재산권 제도 유지 - 새로운 표준을 반영하여 입법 및 관행 변화 - 자원 한도내에서 국제표준 준수위한 기술 협력 -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와 조치 보장	〈현 황〉 - 식물신품종 권리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 완료 (UPOV, WTO/TRIPs 등 적용) 〈실행계획〉 - 신기술 및 국제 규범 관련 지적재산권 부여에 필요한 행정절차 변화 - 지적재산권 법안 실질적 진전- 적절한 민사 및 행정법 절차 유지 - APEC 회원국들과 쌍무적 기술 협력 추진

표 4-5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분야 개별 실행계획

미 국	일 본	캐 나 다	호 주	뉴질랜드
〈현 황〉 - '95. 1.1부터 WTO/ROO(원산지규정) 완전 이행 및 제5조에 의거 미국의 ROO를 WTO에 통보 〈실행계획〉 ○ 국제적으로 조화된 ROO와의 일치 - WTO/WCO 조화작업에 참여 - ROO에 따라 WTO/ROO의 작업계획 이행 ○ ROO의 평등, 투명, 중립적 적용 - WTO/ROO에 따라 절차적 규율 준수 - WTO/WCO 원산지 조화작업 계획에 모든 회원국 참여 촉구	〈현 황〉 - WTO/ROO 이행중 - WTO/WCO 원산지조화작업 참여 - 표준 및 적합성 소위 통해 각국의 비특혜적 ROO 조사, WCO에 보고 〈실행계획〉 - 국제적으로 조화된 ROO와의 일치 위해 WTO/ROO 충실히 이행하고 WTO/WCO 추진 및 완료 - SSCP 통해 ROO 요약 작업 완료 - 지역 특혜적 ROO 연구	〈현 황〉 - WTO/WCO 규정대로 적용 - 통보의무 이행 - 원산지결정에 대한 행정, 사법적 검토 및 항소 〈실행계획〉 - 비특혜적 ROO의 평등, 투명, 중립적 적용 위해 WTO 조화 작업에 적극 참여 - 1998년 ROO의 조화 완료 예정	〈현 황〉 - 비특혜적 ROO의 조화 타결되면 이행 예정 - WCO의 ROO 기술위원회 의장국 - ROO정보 교환 촉진 주도 및 특혜, 비특혜 ROO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발간 주도 〈실행계획〉 - 비특혜적 ROO를 WTO하의 조화된 규정에 일치 - ROO를 간단, 자유롭게 유지하고 예측가능, 일관성있게 적용 - '96년 10월까지 일본과 공동으로 APEC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규정 요지 작성 - 비특혜적 ROO 정보세미나 개최	〈현 황〉 - 비특혜적 ROO는 반덤핑, 상계 관세 등에 적용 - 특혜적 ROO는 통상조약에 따라 가격 기준 50% 규정을 적용 〈실행계획〉 - 비특혜 ROO의 국제 조화작업 참여 - "최소공정" 및 "단순조립" 등에 대한 의무규정의 거부를 통해 무역촉진에 기여 - 공정, 투명, 예측가능, 일관, 중립적으로 ROO 적용 노력

4. 농업기술협력회의(ATC)

4. 1. ATC의 목적과 의의

APEC 농업기술협력(ATC) 전문가 회의는 당초 1994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대만이 제안하고 1995년 2월 일본의 후쿠오카 '고위실무회의(SOM)'의 승인을 거쳐 1995년 6월 주 간사국(Leading Shepherd)인 대만이 제1차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996년 5월 호주에서 두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ATC 회의의 목적은 회원국 농업의 발전 수준과 구조 및 경제에서의 비중이 각기 다른 점을 감안하여 농업생산 및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부문에서의 협력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라는 APEC의 장기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내 농업기술협력의 우선 순위와 협력 메카니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제별 추진 방안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SOM에 추천하는 것이다.

ATC 회의는 각국의 견해표명서(Position Paper)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PEC의 18개 회원국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제1차 회의에서는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농산물 수출입국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제2차 회의에서는 ATC의 조직상 적절한 지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여 우선 현재 비공식(Informal) 회의인 ATC의 지위를 공식(Formal) 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대로 SOM에 직접 보고하는 전문가 회의로 유지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2차 회의에서는 ATC의 주요 의제를 첫째, 동식물 유전자원 보호와 이용, 둘째, 농업부문 유전공학 연구, 개발 및 지도, 셋째, 농산물 유통, 가공 및 분배, 넷째, 동식물 검역, 다섯째, 농업 금융, 여섯째, 기술 이전 및 교육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농업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APEC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의견 교환 기능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1차 회의 이후 농업 기술협력을 위한 실천계획에 진전이 있었으며 향후 좀 더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4.2. ATC의 논의 내용

4.2.1. 오오사카 행동지침(OAA)의 이행

ATC는 오사카 행동지침의 제2부인 경제기술협력(Ecotech)에 속하는 분야이므로 제1부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TILF) 분야의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ATC는 협력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 존중 및 대등, 상호이익 및 협조, 건설적 순수 파트너쉽, 합의 도출의 원칙(Principle)과 오사카 행동지침에 규정된 범위(Scope)로 의제를 한정하였으며 특히 농업 및 식량 생산, 가공, 유통 및 분배에 관한 기술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호주가 필리핀 SOM에서 제안한 식량작업반(TFF) 등 다른 APEC 기구와의 업무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4.2.2. 분야별 실천계획

첫째, 동식물 유전자원 보호와 이용 분야에서는 간사국인 대만이 실천 계획의 이행과 동식물 유전자 정보의 수집을 위한 설문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대다수 회원국들이 식물 유전자 교환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되 동물 유전자 자료의 유용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1996년 6월의 FAO 식량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 국제기술회의에 ATC의 활동과 연관시켜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APEC의 지역적 필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였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세미나가 1997년 초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둘째, 호주가 간사국인 농업부문 유전공학 연구, 개발 및 지도 분야에

서는 유전인자 조절기관(GMO)의 상업화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APEC은 이 분야의 세계적 발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 조치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교환에 의해 회원국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농산물 유통, 가공 및 분배 분야의 간사국인 미국은 각국의 농산물 수송, 도·소매 관행, 포장, 전문기술 및 훈련시설 등에 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1996년 10월 홍콩에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와 공동으로 '냉장 및 식품 유통 체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 분야의 성격상 민간 부문인 업계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제한된 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 PECC 및 표준 및 일치성 소위원회(SCSC) 등 다른 APEC 기구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와 분담 및 연계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보고한 실천계획의 수정안을 승인하고 새로운 중장기 과제로 '수확후 가공기술 협력'과 '등급기준 요건 및 규제'의 조화와 '농산물 수급정보' 교환 등을 추가하였다.

넷째, 동식물 검역 분야의 실천계획은 검역에 관한 국제 및 지역 기구의 업무를 완전히 활용하는 동시에 보완이 가능하도록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또한 교육훈련은 국제 기준의 이행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ATC의 활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의 기준 이행에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간사국인 미국은 1996년 5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WTO의 기술무역장벽(TBT)과 SPS 협정의 이행에 관한 APEC의 워크숍에서 이 분야 소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다섯째, 농업 금융 분야는 일본과 대만이 공동 간사국을 맡고 있으며 소그룹 회의는 정보 수집, 교환과 전문가, 컨설턴트 등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단기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 금융과 유전 자원 분야에 관한 합동 세미나를 1997년 초 대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여섯째, 기술 이전 및 교육 훈련 분야는 각 회원국의 훈련시설, 과정,

활동 및 세미나 등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합의하고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시스템(예컨대 인터넷) 활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간사국 인도네시아는 ATC의 다른 분야 간사국들에게 농업기술 이전 및 훈련의 우선순위에 관해 자문하는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제안에 의해 추가된 의제인 지속가능 농업 분야는 천연자원 관리, 효과적 농장경영,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 측정지수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 하였다.

4.3. ATC 회의 결과의 평가

대만이 APEC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한 ATC 회의는 우리나라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의 경우 무역자유화의 대안으로 기술협력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었다. ATC의 활동 범위(Scope)에 농산물 무역자유화 문제 자체가 의제로서 포함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상 지위(Organizational Status)가 실무그룹(Working Group)이나 소위원회(Sub-Committee)로 격상될 경우 자연스럽게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비롯한 농업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ATC를 공식적인 기구로 전환하되 전문가회의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반면 ATC 제안국인 대만은 APEC내에서의 자국의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 ATC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결국 제2차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협조와 지속적인 발언으로 활동범위에서 무역자유화 문제를 배제한다는 사실을 요약보고서 제4절에 명문화하였으며 조직상 지위 격상 문제는 일단 결정을 유보하였으나 차후 다시 문제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5. 식량작업반(TFF)

5.1. 식량작업반의 의의 및 설립 배경

1995년 오사카 APEC 정상회의시 발표한 선언문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필리핀의 제2차 SOM에서는 경제위원회(EC) 산하에 식량작업반(Task Force on Food, TFF)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필리핀의 다바오에서 열린 제3차 SOM에 앞서 첫번째 회의를, 그리고 마닐라의 제4차 SOM에 임박하여 두번째 회의를 잇달아 가졌다.

TFF의 목적은 APEC 역내 식량 문제를 연구, 검토함으로써 장래에 당면하게 될 식량위기를 다루는 공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 범위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역내 식량 수급에 미친 효과(생산, 기술변화, 교역, 재고, 가공 및 유통)를 분석하고 식량과 환경간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며 사례 연구를 통해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여 공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는 것이다.

TFF의 기능 및 작업범위 등에 대한 제안서는 일본과 호주가 각각 제출하였으나 일본안은 식량 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국이 국내 생산을 유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의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막아보려는 배경이 있었던 반면에 호주안은 식량 문제가 완전하고 철저한 자유무역과 농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철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일본과 호주가 TFF의 공동 의장국이 되어 양국의 사전 협의에 의해 도출한 초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의견을 듣고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5.2. TFF 주요 쟁점 및 논의 내용

제1차 회의에서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를 보인 TFF의 주요 쟁점과 회

의 결과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작업반이 분석할 대상분야(Work area)를 의장 초안에는 식량 수요/ 생산/ 교역/ 재고/ 가공 및 유통/ 식량과 환경간의 상관관계/ 향후 식량수급 전망의 7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나치게 세분되고 상호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4개 그룹으로 재편성하였다.

(제1분야) 식량수요, 생산, 교역, 재고

(제2분야) 가공 및 유통

(제3분야) 식량과 환경간의 상관관계

(제4분야) 향후 식량수급 전망.

둘째, 분야별로 간사국(Shepherds)을 지정하여 분석 작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일본이 7개 분야별 간사를 중심으로 작업할 것을 주장한 반면 호주는 의장 중심으로 작업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4개로 통합된 분야별로 간사국(혹은 공동간사국)을 선정하되 1996년 10월의 제2차 회의에서 제1분야는 우리나라와 호주, 제3분야는 대만과 뉴질랜드, 제4분야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공동 간사국으로 결정되고 제2분야는 추후 선정하기로 하였다.

셋째, 작업 시한(Timetable) 문제는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서 1999년에 개시될 UR 후속 협상에 작업반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 논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호주는 가능한 한 짧은 시한(1997년 분석 완료, 1998년 정책 대안 제시)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오오사카 선언문에 근거하여 TFF를 장기적인 과제로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간에 따라 분석 작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에 시한을 명시하지 말고 유동적으로 시한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 2차 회의에서도 호주와 일본의 주장이 팽팽하여 작업의 최종 시한은 결정하지 못한 채 1997년의 마지막 TFF 회의때 분석 결과의 중간보고(Interim Report)를 포함한 진도보고서(Progress Report)를 채택하여 EC를 통해 SOM에 보고하고 SOM은 다시 각료회의와 정상

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넷째, 자료 범위(Data dimension)는 일본이 1970년대의 곡물과동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1960년대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호주는 1975년 이후의 자료를 수집,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결국 양국의 입장을 절충한 1970년부터의 자료를 수집, 분석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섯째, 분석대상 품목(Products)은 식량곡물, 사료곡물, 감자류, 유지, 육류 및 낙농제품의 여섯가지 외에 수요 분석에 한해 수산물도 포함한다는 것이 일본의 초안이었으나 회의 결과 채소, 과일, 두류 및 설탕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여섯째, 향후 수급예측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하여 일본은 정확한 향후 식량수급 전망을 위해서는 인구 증가 및 환경의 변화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서술적, 定性的 방법론(Qualitative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호주는 수량자료와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는 定量的 접근방법(Quantitative Approach)을 주장하였다. 회의 결과 양국의 방법론을 병행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5.3. TFF의 평가 및 향후 TFF 대책

TFF는 설립 동기부터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상반된 입장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두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많은 사항이 합의에 도달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분석작업 시한에 대한 사항은 APEC 뿐만 아니라 UR 후속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한 문제로서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한결같이 “1997년 분석 완료, 1998년 식량문제 대안(예컨대 농산물 무역 자유화 확대) 제시”라는 작업 일정표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우리 나라와 일본과 같은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은 TFF 분석 작업의 결과가 1999년 UR 후속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작업시한을 장기간 또는 유동적인 시한을 유지하려는 입장

을 강조하여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호주를 위시한 수출국들이 TFF의 분석 결과를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유 무역 확대”라는 결론으로 도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반면 일본 등 수입국들은 분석 결과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국내 생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으로 예정된 UR 후속협상에 분석 결과를 이용하려는 호주의 계획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나라의 TFF 대책은 첫째, 중국, 대만 등 농산물 수입국들과 사전에 비공식 접촉과 양자협의를 통해 분석 작업의 시한 조정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대안의 제시 등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나라가 공동간사국으로 선정된 제1분야인 식량수급 분야는 식량의 생산, 소비 및 교역과 재고 문제를 취급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회원국별, 대상 품목별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식량문제가 향후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과 그에 따라 각국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개발, TFF에서의 발표와 SOM 및 각료회의의 보고를 통해 농산물 수출국들의 논리에 대응하여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ASEAN 등 농산물 무역에 대하여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문화교류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식량수입국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향후 APEC에서의 대립적인 사안에 대한 지지와 동조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 협조체제 확립할 필요가 있다.

6. 향후 전망 및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1996년 11월 필리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마닐라 실행계획(MAPA)은 APEC의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2010년 또는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보고르 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계획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18개 회원국 모두가 동시에 이행을 개시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구속력을 갖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닌 자발적 협의(Consultation)와 일방적인 이행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크며 WTO 체제하의 세계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MAPA는 상호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회원국들의 자유화 추진 노력이 약화되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UR 협정에서 양허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는 경우 외에는 각국이 취약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다른 회원국들의 상응한 자유화 조치를 유발하기 위해 형평성(Comparability)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실행계획의 초안(Draft)보다 오히려 후퇴한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6년은 MAPA가 채택되고 1997년 1월부터 동시 이행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더 큰 탓에 각국이 다른 회원국들의 실행계획(IAP)에 대체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MAPA의 성격이 고정적(Fixed)이 아니라 매년 또는 협의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가변적 특성(Rolling Nature)을 갖기 때문에 이행이 개시된 후에도 추가적인 자유화의 압력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UR 후속 협상과 관련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이 준비 단계의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ASEAN도 자유무역지대(AFTA)의 창설을 위한 관세 인하를 1993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완료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역내 무역자유화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

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APEC 역내의 무역자유화 논의에 참여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PEC의 WTO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우리 나라는 UR 협정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해왔음이 사실이다. 특히 농산물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관세, 비관세조치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행계획을 준수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이미 관세화 되었거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UR 협정의 이행이나 가속화 또는 UR 결과의 심화를 논의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다른 회원국들의 UR 협정 이행에 대한 감시와 조언도 수반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홍보하는 한편 전진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WTO 후속협상 문제에 대해서 1999년 이전에는 준비작업(Preparatory Work)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협상 개시에도 반대하는 현재의 입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쌀의 관세화를 유예할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관세상당치(TE)가 사실상 수입금지(Import Prohibitive) 수준으로 높게 책정되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추한 관세화(Dirty Typification)'라는 비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품목의 TE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고르 선언의 실천을 위한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마닐라 실행계획(MAPA)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 나라의 실행계획이 제출되어 있으나 MAPA의 성격이 가변적임을 감안하여 국내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충격이 낮은 품목 혹은 부문만이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전진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2010/2020년을 향한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국제 조류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농업기술협력(ATC) 전문가 회의는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함께 APEC의 양대 지주의 하나인 경제기술협력(ECOTECH)

사업에서 농업부문과 관련된 유일한 회의이다. 또한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유전공학 연구 개발, 그리고 동식물 검역과 식품 유통 및 가공은 물론 지속가능 농업기술 등을 포함한 ATC의 7개 사업 분야에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적 위치에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후진국 인력을 교육, 훈련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국익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PEC 식량작업반(TFF)은 1995년 오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 의거 설립된 기구이며 식품의 생산, 소비 및 교역과 재고 분야의 분석 작업에 우리나라가 공동간사국으로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간사국을 담당한 국가로서 회원국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분석 결과가 향후 무역 자유화의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분석 작업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과 미국이 향후 식량수급 문제를 전망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의 분석 작업 결과가 신빙성을 가지면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국내 생산을 유지, 확대시키는 근거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작업 참여자들의 유기적 협조와 각별한 노력이 요청된다.

제 5 장

OECD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1. OECD의 논의 동향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rpo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활동영역은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며, 이러한 활동은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농업문제는 농업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농업위원회는 농정개혁에 관한 사항 즉, 농업보조의 감축과 시장지향성의 제고 및 이에 대한 회원국의 활동을 이행점검(monitoring)하고 있다. 농정개혁 점검의 주요 목적은 1987년 및 그 이후 각료급 선언에 나타난 농정개혁의 원칙과 행동지침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 변경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시장 지향적 정책, 수급전망, 직접소득보조, 환경 및 지역개발 전략 등을 평가하며, 회원국의 농업보조 수준을 PSE/CSE (Producer/Consumer Subsidy Equivalents: 생산자/소비자 보조상당치)로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덜 왜곡되고 더욱 자유로운 무역체제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농정개혁에 있어서 생산

감축, 생산자재의 양적 감축 등을 통한 공급관리, 직접소득보조의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정개혁이 농업고용 및 관련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농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리고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OECD의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면 우루과이 라운드(UR)와 관련된 문제 및 새로운 의제와 관련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UR과 관련하여 OECD는 농산물 분야에 대하여 협상결과가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바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평가가 이행기간 만료 1년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차기 다자간 협상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측도 하고 있다. 즉, UR에서 자동협상 의제로 차기 다자간 협상에 대두될 문제와 함께, 이미 합의되었던 조항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차기 의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OECD의 UR 평가작업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UR 타결이후, 환경, 경쟁, 노동, 부패, 투자 문제 등이 새로운 다자간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OECD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 경쟁, 노동, 부패 및 투자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과 부패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농업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며, 환경문제는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의제와 관련하여서는 경쟁과 투자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결과의 평가

2.1. 우루과이 라운드와 OECD의 역할

OECD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는 WTO의 전신인 GATT에서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회원국간의 의견교환과 필요시 공동해결책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며,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

였다. 즉, OECD의 활동은 UR 농산물 협상의 진전에 영향을 미친 것이 판명되었다. 1986년 UR이 출범할 때까지 그리고 GATT의 농업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Agriculture)의 예비 작업과 병행하여 OECD는 1982년의 각료무역훈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분석작업을 하였다. 첫째, 농업보호의 균형 삭감을 위한 방법과 공개된 다자간 무역체제로 농업을 통합 둘째, 다양한 농정 목적을 농업무역의 질서 있고 개선된 발전과 조화하면서 달성하는 방법 셋째, 국가정책과 농산물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검토 등이다.

1987년 OECD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각료들에게 “국가정책과 농산물 무역(National Policies and Agricultural Trade)” 이라는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OECD 각료들은 농정개혁을 위한 원칙을 도출하였는 바, 이 원칙은 농업보호의 점진적이고 협조적인 감축과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신호가 작동하는 장기 목표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OECD는 회원국의 농정개혁 활동에 대한 검토와 함께 PSE/CSE를 이용하여 농정으로 발생한 이전액을 측정하는 매년의 이행점검을 시작하였다. 즉,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보조를 규명하는 노력이 PSE 또는 그 변형된 방법에 집중됨으로서, OECD의 작업은 UR 농산물 협상의 진전에 영향을 미친 것이 판명되었다. UR 협상이 종료되면서, OECD는 회원국에 있어서 UR 농업협정이 농정개혁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정도에 초점을 두고 UR 협정이 농정 및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2.2. OECD 회원국의 농정과 무역에 대한 의미

다음은 OECD 회원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UR 협정의 중요성에 관한 예비평가로서, 정책과 시장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결과가 예비평가라 하더라도, 이 작업은 사무국이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에 대하여 수행한 세부적인 검토에 기초하였다. 평가작업은 협정의 이행기간(2000년까지)에 걸쳐 발생가능

한 시장 및 정책의 변화들과 관련되어 있다.

2.2.1. 시장접근 조항

모든 관세는 (양허되지 않았다면) 양허되고 감축될 것이며, 모든 비관세 장벽은 (특별취급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상당치로 전환되면서 양허되고 감축될 것이다. 현행/최소접근 조항도 이와 같은 관세화된 상품에 적용된다.

가. 관세화: 현행/최소시장접근

최종 GATT 협정 및 이와 관련된 이행계획서가 현행/최소접근 수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협정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현행/최소접근 조항이 오직 관세화된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관련 조항이 Modalities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행 계획서에 명시된 특정한 약속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해당국가는 이 조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곡물의 경우 최소시장접근 조항에 따라 시장접근의 확대가 있을 것이다. 쌀 무역은 이행기간 종료시 까지 최소접근조항으로 100만톤 정도의 확대가 예상되며, 그 대부분은 일본과 한국 및 인도네시아가 수입할 것이다. EC(유럽공동체)는 50만 톤의 옥수수과 30만 톤의 밀에 대한 새로운 시장접근을 허용하였고, 캐나다도 밀의 관세할당량을 136,130톤에서 2000년까지 226,880톤으로 증가시켰다.

낙농품 및 육류의 시장접근도 증가할 것이다. EC는 시장접근 기회에 중요한 양보를 허용하였다. 스위스는 육류, 낙농품 및 감자에 대한 접근 증대를 허용하였고, 미국은 낙농품 및 쇠고기에 대하여 접근 증대를 허용하였다. 미국은 기타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만 적용하고 있다. 설탕의 미국시장 접근에는 변화가 없다. 캐나다는 칠면조, 계란 등과 같은 많은 상품에서 접근의 확대를 허용하였고, 버터와 마아가린 처럼 수입이 금지되

있던 경우 관세할당량을 제정하였다. 노르웨이는 필요 농산물의 많은 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최소접근 물량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 아이슬랜드는 축산물과 낙농품의 수입에 중요한 양허를 하였는 바, 이 상품들은 기준기간중 수입되지 않은 것이었다. 일본은 특별취급 조항 하에서 최소 시장접근의 허용을 선택한 쌀에 예외조항을 갖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NAFTA와 관련하여 허용된 수입양허가 최소접근약속에 흡수되었으나, 분유의 시장접근 증대를 허용하였다.

OECD 국가중 현행/최소접근 조항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는 낙농품의 경우 뉴질랜드, 육류 및 일부 낙농제품의 경우 호주이다. 이들은 미국과 EC 시장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는 새로운 관세할당 협정에서 기준기간 동안 통용되었던 수준에서 특혜접근을 회복하는 것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한국과 일본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관세화: 비관세장벽의 전환

미국의 경우, 곡물과 유지작물에 적용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관세가 양허되었으며, 이행기간중에 36~74%가 삭감될 것이다(단, durum 밀의 관세는 16% 삭감). 관세화된 부문은 낙농품과 쇠고기 등이다. 모든 경우 관세 삭감의 최소 허용 비율은 15%이며, 관세화되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이행기간 종료시에 계속 적용될 것이다. EC는 많은 상품이 관세화의 대상이며, 상품간에 거의 일정하게 평균 36% 삭감할 것이다. 주요 예외품목은 설탕과 탈지분유로서, 20% 삭감될 것이다. 36% 삭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이행기간 종료시에 적용될 것이다.

캐나다의 관세화되는 부문은 밀, 보리, 낙농품, 쇠고기 등이다. 쇠고기를 제외하고 1995년 부터 30.3%의 비율을 적용하는 미국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바, 이는 이행계획서상의 비율보다 낮다. 관세화되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이행기간 종료시에도 계속 적용될 것이다.

일본의 관세화 대상은 밀, 보리, 낙농품 및 돼지고기 등이다. 기타 곡물과 유지작물의 관세율은 이미 낮은 수준이거나 무관세이다. 쇠고기는 1988년 관세화되었고 관세는 50%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38.5% 수준까지 더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거의 모든 다른 상품에서 최소 15% 감축을 적용할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이행기간 종료시에 계속 적용될 것이다. 호주의 대부분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에 있으나, 관세 감축에 관한 합의로 현행 관세를 더 낮출 것이다. 감축 폭은 15% 이다. 설탕은 기준기간 동안 운용되었던 수입금지 대신에 관세화하였으며, 감축될 것이다. 치즈를 제외한 낙농품의 종량세는 이행기간 종료시 까지 1% 수준의 종가세로 전환될 것이다.

뉴질랜드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에 있거나 무관세이다. 합의된 감축은 25~27% 수준이다. UR 합의 이전에도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와 배 등 매우 적은 수의 상품만 관세화하면 된다.

스위스의 경우 많은 농산물이 관세화의 대상이다. 유지작물, 잡곡 및 양모를 제외하고, 관세화되는 모든 기초 농산물에 최고 15% 감축을 적용하였다. 이 결과 이행기간 종료시에 주요 농산물의 할당량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주요 농산물 모두에 대하여 관세화가 적용된다. 주요 농작물에 적용될 감축 폭은 30% 수준이며, 최소 15%가 주요 육류와 낙농품에 적용된다. 이행기간 종료시에 높은 관세가 계속 적용될 것이다.

이슬랜드도 전 농산물에 관세화가 적용되며, 적용될 감축 폭은 일정하게 50% 이다. 축산물과 낙농품도 관세화되며, 통상 최소 15% 감축이 적용된다. 이 결과 이행기간 종료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계속 적용될 것이다.

멕시코의 농산물 관세는 1986년 GATT 가입시 양허되었으며, 이 양허가 이행되고 있다. 약 50% 수준인 양허율은 10~20%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율보다 높다. 감축 수준은 특별 및 차별취급의 적용을 반영하

여 10년 동안 최소 10% 그리고 평균은 24% 이다.

다.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Special Safeguard Provisions: SSP)

SSP 발동의 가능성은 관세화의 무역효과를 감소시키고 관세화 과정의 투명성도 약화시키며, 관세가 변화하기 쉬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SP를 포함한 것은 시장접근 조치를 모두 한 묶음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중요하였다. 그러나 관세화로 설정된 관세가 높기 때문에 이행기간중의 무역량 증가의 대부분은 최소접근 조항하에서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SSP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시장접근 약속의 무역 및 농정에 대한 의미

관세화는 농업정책 환경에 주요 변화를 가져오며, 실제로 국내 농업정책의 지지에서 사용된 과다한 조치들에 의존하는 것을 소멸시키고 있다. 수량적 수입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국영무역을 통한 비관세 장벽, 자율수출규제 등과 같은 유사한 국경조치들은 새로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가 설정된 수준과 감축의 크기 등을 볼 때, 무역량의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최소접근 조항으로 나타날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OECD 국가에서 시장접근조항이 무역과 농정에 미치는 효과는 현행/최소접근에 따른 수량적 약속에서 발생할 것이다. 무역량 또는 국내 농업정책에 관한 효과는 국별이행계획서에 포함된 관세할당량이 새로운 양자간/다자간 협정을 포함하거나 또는 단순히 현행의 특혜접근 약속을 흡수하는 정도에서 제한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OECD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상품의 무역흐름은 더욱 경쟁적인 환경에서 결정될 것이다.

시장접근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있다. 새로운/확대된 관세할당량을 통하여 증가된 접근 물량의 할당방법도 확실하지 않으며, 접근기회의 구성요소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OECD 지역과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양자간/지역간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SSP의 운용 가능성에 불확실성도 있으며, 이행계획서에 참조가격을 정의하지 않은 국가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행기간중 발생하는 수입의 증가는 국내 수급균형에 압력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접근 기회의 확대를 허용한 국가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의 수출에 보조를 주는 경우, 국내 정책에 대한 압력은 강화될 것이다.

2.2.2. 국내보조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약속이 존재하는 것은 농업협정의 가장 의미있고 혁신적인 사항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가. AMS 약속이행과 정책조정의 필요성

국내보조의 측정은 감축이 확실하게 무역과 생산을 왜곡시키는 정책에 적용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면제 및 예외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들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AMS(Aggregate Measure of Support)는 주로 시장가격지지 조치와 생산자에게 가격지지를 제공하는 직접지불과 같은 기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약속은 Total AMS를 기준기간의 US\$ 239억에서 이행기간 종료시에 US\$ 191억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기준기간중 거의 US\$ 100억을 차지한 부족불지불이 기준 및 최종 양허약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부족불지불은 현재의 Total AMS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결과는 미국이 AMS 약속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Total AMS를 감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행기간중 AMS 약속과 관련한 정책변화는 발생할 것 같지 않다.

EC의 Total AMS 약속은 기준기간의 735억 Ecu에서 2000년 까지 최종 양허수준인 612억 Ecu로 감축하는 것이다. 1993년의 Total AMS 추정치는 1993년에 거의 110억 Ecu가 이미 감소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10억 Ecu 수준의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곡물에 결정된 가격 감축이 1994년 및 1995년에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용이하

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EC는 어려움 없이 AMS 약속을 충족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정책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AMS 약속은 C\$ 53.76억에서 2000년에 C\$43.01억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1993년의 AMS는 C\$40.78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서부곡물운송법의 폐지와 같이 이미 발표된 정책변화와 감축약속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고안된 Income safety net schemes를 향한 변화들은 캐나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AMS의 최종 양허수준에 도달할 것임을 의미한다.

일본의 Total AMS 약속은 4조 9660억푼에서 2000년에 3조 9729억푼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AMS 구성에서 쌀의 비중이 절대적이나, 기준기간 이래 쌀의 관리가격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의 AMS는 크게 떨어졌고, 관세화로 쇠고기의 AMS도 떨어졌다. 따라서 일본은 이미 AMS의 최종양허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AMS 약속은 기준기간의 SF 53.21억에서 2000년에 SF 42.57억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기준기간 이후 지지수준이 증가하였으므로, AMS 약속을 위하여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예비계산에 의하면, 특정 직접지불이 제외될 것이라는 변화와 최근에 이행된 정책변화에 따라 약속의 반 정도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나, AMS 약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호주의 1993년 추정 Total AMS는 기준기간이래 이미 추진중에 있는 규제완화와 개혁노력을 반영하여 기준기간 수준의 반 이하이다. 따라서 국내지지 약속으로 인한 추가적인 정책변경의 필요성은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 1986~88년의 계산에서 나타나듯이 AMS가 사라진 정도이다. 경제전반에 걸친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준기간 이전에 생산자가격 지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철폐하기 시작하였다. 기타 남은 조치들은 de minimis 조항에 따라 AMS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국내지지 약속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변화는 없다.

노르웨이의 경우 농산물가격이 1980년대 후반에 상승하였고 품목불특정적인 지불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MS 약속을 위해서는 중

대한 정책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아이슬랜드의 AMS 계산은 최근까지 보완되지 않았으나, PSE에 따르면 1986-88년이래 농업보조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AMS와 PSE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아이슬랜드는 이미 AMS 약속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멕시코는 Procampo programme 형태인 생산중립적인 직접지불로 전환함으로써 AMS 약속을 이미 충족하였다.

나. 국내지지약속의 평가와 정책및 무역적 의미

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가가 AMS 약속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책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듯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지지약속의 중요성은 이미 나타난 정책전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평가가 농정개혁을 위한 각료원칙에서 설정된 기준 즉, 농업보조의 감축과 시장지향성의 제고 방향에서 매년 이행되고 있는 감시과정과 관련하여 있다. 각료원칙 이후 개혁조치의 추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PSE로 측정된 농업생산자에 대한 전가액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보조의 대부분은 시장가격지지이다. 둘째, 생산제한조치와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균형의 개선에 기여할지 모르나, 반드시 시장지향성의 제고나 보조의 감축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경제왜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직접지불제는 통상 생산/생산요소와 연계되어 있으나, 생산과 무역을 덜 왜곡시키는 데 있어서 일부 진전은 있었다.

국내지지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이미 취해진 조치 이상의 정책변화를 예상할 수는 없으나, 국내지지약속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향후의 정책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즉,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대부분의 보조에 상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감축약속이 명목가치를 잠식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하다.

감축약속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치의 특성은 1987년의 OECD 각료원칙의 특정 측면을 이행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 생산과 무역을 최소로 왜

곡시키면서 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덜 들고, 목표 지향적인 정책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감축약속에서 생산제한정책을 제외한 6조 5항과 관련하여, 생산제한정책이 가격지지보다 통상 생산과 무역을 덜 왜곡시키지만, 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속서 2에 정의된 “decoupling”의 핵심 요구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2.2.3. 수출보조

가. 수출보조 약속

수출보조 약속은 시장과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조항으로서, 수량과 금액에 대한 제한을 수용한 것은 농업협상에서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수출보조 약속의 효과는 각국이 지원했던 수출보조의 범위에 따라 다르다. 일본은 농산물 수출이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수출보조에 대한 약속도 없으므로 영향도 없다. 뉴질랜드는 향후 수출보조를 도입하지 않을 것을 제외하고 일본처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수출보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보조의 양과 금액의 삭감이 요구되었다. 캐나다는 서부곡물운송법에 따른 보조의 삭감이 요구되었으나, 이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낙농분야에서 생산자조달수출보조금의 삭감도 요구되었다. 미국의 수출보조 약속의 주요 효과는 밀에서 나타날 것이다. 스위스는 낙농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자와 옥수수 등에 대한 수출보조도 감축대상이다. 노르웨이의 수출보조 약속은 낙농품의 정책개발에 제한을 가할 것이나, 포함된 수량은 세계 교역량에서 크지 않다. 아이슬랜드는 UR이 합의되기 이전에 수출보조금을 폐지하였다.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밀, 옥수수, 콩 등에 대하여 수출보조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 수출보조 약속의 평가

수출보조 규율의 채택은 수출보조의 합법화 즉, 농산물과 수출보조금이

금지된 타상품간에 중요한 구분을 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다. 허용된 수출보조금과 수량은 모두 감소할 것이지만, 잔존하는 허용 물량과 지출은 중단기적으로는 일부 농산물의 무역에 분열적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역 성장은 보조금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거래량의 비중 증가도 시장의 힘에 따라 발생할 것이다. 수출신용은 명백하게 규율되지 않았으나, WTO 회원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될 규율의 개발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수출진흥과 자문서비스는 수출보조금과 국내지지 감축약속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수출보조 약속의 불확실성은 진행중인 정책변화가 수출보조금 약속을 이행할 정도로 충분하게 수요와 공급 및 가격조정으로 나타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국제 밀 시장은 주요 수출국들이 시장 몫의 유지 또는 증대를 위하여 경쟁적인 수출보조를 하는 등 긴장 속에 있다. 중기 전망에 따르면, 세계 밀 가격은 이행기간 종료시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시장의 기능은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금세기 말까지 OECD 지역 및 그 밖의 국가들의 고도성장과 현재 진행중인 OECD 국가의 정책 변화(EC의 CAP 개혁 및 미국의 보존유지정책으로 부터 토지의 해제 등)와 UR 협정의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곡물 단위 증가의 감속, set-aside 정책, 사료 이용의 증가 등을 가정하면, EC의 보조된 밀 수출은 GATT 협정에 따라 제약받게 될 수준까지 감소되고 재고는 중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미국은 보존유지정책에서 토지를 해제함으로써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이므로, 밀 생산은 증가하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몫도 증가할 것이다. 캐나다는 수출보조 약속을 위한 것 이상의 정책조정을 발표하였으며, 밀 생산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잡곡(coarse grain)의 수출보조 사용은 밀처럼 광범위하지 않다. 수출보조 규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주요 국가/지역은 캐나다와 EC 인바. 캐나다는 관련 보조금의 철폐를 발표하였다. EC는 세계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보조없이 수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기적으로 볼 때, 국제 낙농품 시장기능에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바, 그 이유중의 하나가 수출보조 약속이다. 버터와 탈지분유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약세일 것이나, 생산이 수요보다 더 빠르게 감소함으로서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치즈가격도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요증가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호주, 미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조정을 통하여 수출보조 제한을 충족시킬 수 있다. 낙농품 생산 및 소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 전환을 볼 때, EC는 버터와 탈지분유의 수출보조 제한을 충족시킬 것이다. Front loading 조항의 덕택으로 EC 치즈의 보조받은 수출은 증가하였다. 버터, 탈지분유와 치즈의 세계시장가격은 상승할 것이나, 이 상승이 호주와 미국의 버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차를 근접시킬 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출을 계속하기 위하여 과거에 수출보조를 했던 국가들은 계속 수출보조를 해야 할 것이다.

EC는 쇠고기 수출에 보조를 하는 유일한 수출국이다. EC의 생산과 소비 전망에 의하면 보조의 최대허용수준에서도 재고가 증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쇠고기 부문에 정책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쇠고기 수출중 일부 소량에 보조를 했던 기타 국가들이 이행기간중 보조금 없이 수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보조수출에 대한 제한은 EC에 영향을 줄 것이며, 미국의 가금류에도 적게나마 영향이 있다. EC의 보조금을 받는 수출은 중요하지만, CAP 개혁은 투입비용을 절감하며, 이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조받지 않은 수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돼지고기의 세계시장가격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며, 가금육도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보다는 적겠지만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실현되면, 수출보조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감축약속이 용이하게 충족되며, 가격 차이도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2.4. 위생 및 검역 조치(SPS Measures)에 관한 협정의 의미

SPS 조치에 관한 협정을 농산물 무역과 관련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협정은 특정한 의미에서 특정 정책을 규제하지도 않고 규제할 수도 없다. 국가별로 지리적인 차이 및 위생조건의 차이 때문에 각기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균일한 SPS 요구사항을 채택하는 것도 어려우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수입국에 적절한 위생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양자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 협정은 중요할 수 있다. 과거에는 SPS 조치에 관한 분쟁이 양자간으로 해결되었으며 이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강화된 분쟁해결 절차 때문에 국제표준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이 조화와 동등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표준의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면서 자국 표준을 고집할 경우, 과학적인 토의와 증거의 평가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해석상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며, 협정의 효율성이 평가되기도 전에 해석상의 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전반적 평가

2.3.1. “원칙적” 평가

UR 농업협정은 농업정책과 무역환경을 변환시킬 잠재성을 갖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적용될 규율이 국내농업정책과 무역정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정책이 규율되어야 한다고 UR 초기에 주장했던 야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측면이다. 국내농정 특히, 관리가격과 생산 및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정의 핵심 변수에 한도를 주었다. 각국은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약속을 하였고, 품목특정적인 보조는 Due Restraint 조항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수입과 관련한 최소접근 약속은 폐쇄되었던 시장이 관세화로 비관세장벽은 제거되고 감축해야 하

는 양허 관세로 대체되면서 시장도 일부 개방토록 하였다. 수출보조도 수량과 금액의 감축 약속에 따르고 기준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상품에는 도입될 수 없다. SPS 조치에 관한 협정은 무역 마찰의 원인이었던 문제 해결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분쟁해결 절차의 개선과 무역규칙의 강화는 농산물 무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2.3.2. 이행기간중 무역과 농정에 미치는 효과

농업협정이 무역과 정책에 미치는 효과는 이행기간 초기에는 크지 않으나, 이행기간이 흐르면서 그 효과가 강화될 것이다. 향후 6년간의 효과를 요약하면 첫째, UR이 타결되기까지 여러 해가 지연됨으로써 감축 기준기간이 오래되었고, 따라서 일부 국가는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다. 둘째, AMS와 수출보조금의 감축수준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평균적인 관세 감축도 중요하나, 그 효과는 가중체계의 결여와 평균 감축이 과거에 존재한 관세를 많이 삭감하고 관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세를 적게 삭감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축소되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무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무역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쌀, 낙농품, 육류 등이 현행/최소접근 약속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상품의 경우 관세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 때문에 추가적인 무역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수입증가는 관세할당량 약속 내에서 및 관세할당량내에서 양자간 또는 기타 약속에 따라 발생할 것이다. 수출보조 조항으로 가장 영향을 받게 될 시장은 밀 시장이며, 미국, 호주, 터키가 생산을 증대함으로써 시장 몫이 증가할 것이다. 낙농제품(특히, 치즈)과 태평양지역의 쇠고기 시장, 돼지고기 및 가금류 시장의 개선이 예상된다.

세계가격에 미칠 영향은 적절할 것이다. 이 판단은 시장접근의 증가, 일부 수출보조금의 지속, 새로운 무역기회와 관련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러나 보조금이 적은 국가들의 능력과 관련하여 본 것이다. 가격변화는 WTO 합의의 이행으로 지지되겠지만, 이는 주요 결정요인이 아

니다. 오히려 UR 합의에 따라 비OECD 국가에서의 높은 경제성장과 이에 수반될 수요증가가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 지역의 쇠고기 시장과 중기적인 치즈시장에서 가격결정의 주요 변수는 농업협정이다. 곡물과 돼지고기의 국내외 가격차는 많이 감소될 것이나, 대부분의 상품에서 제거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은 정책변화의 가능성이다. AMS 약속에 따르면, 미미한 정책조정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AMS 약속을 위하여 국내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국가는 관련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아니다. 수입 증가와 보조받은 수출의 감소로 인한 복합적인 효과가 정책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행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입과 수출이 제한 받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이행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추가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예로서 EC의 쇠고기 시장을 들 수 있다. 또한 시행중인 정책변화가 수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예측이 과대 평가된 경우, 밀과 낙농품과 같은 부문에서 추가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이행기간 초기부터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스위스는 조정하고 있다. 장기효과 즉, 기준연도의 명목가치에 고정되어 있는 각 변수들에 대한 물가상승 효과와 관련하여 볼 때, 시장접근,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효과는 보조와 보호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감축하려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에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2.3.3. 위험과 불확실성

일부 국가들은 협정 이행을 위하여 채택해야 할 기구나 mechanism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부 불확실성은 관세할당량의 할당과 관련되며, 수출보조금이 배분되어야 할 경우 할당방법도 개발해야 한다. 협정과 국별이행계획서의 검토 결과 해석상 모호한 점이 많이 나타났으며, Due restraint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중 명확히 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SPS 협정의 이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협정의 효과와 관

련하여 중요하다.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에서 수많은 비대칭적인 규율 즉, 삭감크기와 기준연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사항들은 이행 및 방법론에 관한 사항들이 토의될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사항중의 하나로 TE 계산과 AMS의 시장가격지지에 서로 다른 참조가격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Special safeguard 조항에 호소할 경우 다른 참조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결과 투명성은 낮아질 것이다.

허용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정 6조 5항하에서 감축약속에서 제외된 생산제한조치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정의된 조치는 부속서 2에 정의된 의미에서 볼 때, 충분히 decoupled된 것은 아니다. 6조 5항의 생산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생산제한지불을 채택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각국은 공급관리를 증대시키면서, 시장지향도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품목 특정한 지원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Due restraint 조항의 역할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이와 같이 농업협정의 효과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이행기간중의 경험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협정 20조는 기본적인 개혁으로 보조와 보호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삭감이라는 장기목표의 성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되는 진행과정이 장기 목표를 향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2.4. 향후의 검토과제

이상의 평가는 이행기간 만료 1년전에 시작하기로 예정된 차기 다자간 협상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즉, UR에서 자동협상 의제로 차기 다자간 협상에 대두될 문제와 함께, 이미 합의되었던 조항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차기 의제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평가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감축 약속

에 대한 이행기간중의 경험이 축적되고, 감축약속의 효과도 종합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차기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와 함께 UR 협정에서 차기에 고려하기로 합의한 비교역적 사항,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별 대우,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 무역 체계를 설정하려는 목표, 보조와 보호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삭감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약속들이 토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업과 경쟁정책

3.1. 경쟁정책의 필요성

1992년 이후 각료훈령에 기초하여 무역위원회와 경쟁법정책위원회는 무역자유화와 세계화를 근거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는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UR이후 무역과 직접투자의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위하여 경쟁정책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직접투자와 경쟁정책간의 결합의 증진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쟁체계의 활성화와 무역의 증가는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유리하다는 것이 OECD 국가에 널리 알려진 견해이며, 경쟁시장 체계는 가격상승을 제약하고 기업의 비용 최소화를 유도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전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완전경쟁”은 시장구조와 기업의 수행능력에 오차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 이상적인 시장이며, 따라서 불완전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장행위를 규율하는데 가장 적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있다. 경쟁정책은 통상 시장력의 분산, 시장경쟁의 보호, 경제후생의 증진 등 3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경쟁정책의 국제적 측면은 모든 OECD 회원국의 관심사항이다. 어느

한 국가에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이 결여될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경통제와 기타 조치들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무역기회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무역 및 산업정책과 비교하여 경쟁정책은 상대적인 투명성과 중립성을 포함하여 선호될 수 있는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은 양자간/다자간 무역협정에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도 국제무역 및 투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쟁정책의 역할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OECD는 경쟁과 시장접근의 저해요인으로 사기업의 반경쟁적 기업관행, 정부의 반경쟁적 무역조치, 각국의 상이한 규제조치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토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과 경쟁정책의 관계에 대하여, 무역에 영향을 주는 경쟁상의 문제는 수출입 카르텔, 수출자유규제, 지적재산권 관련 제한, 다국적 기업에 의한 기업간 협정 등을 들 수 있으며, 경쟁에 영향을 주는 무역조치는 수출촉진정책, 수입대체정책, 수출제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조치 등을 들 수 있다. 무역과 관련된 경쟁문제의 구체화에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바, 그 예로 반덤핑을 경쟁을 저해하는 무역조치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을 들 수 있다.

3.2. 농업부문에서의 경쟁 문제

농업부문에서도 경쟁정책의 범위와 경쟁정책과 농정개혁간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쟁정책과 농정개혁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이유는 첫째, 농업부문에 공통된 정부개입이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 경쟁정책과 농정개혁간에 존재하는 주요 원칙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며 셋째, 농업부문은 경쟁법으로 부터 특별히 예외 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넷째, 농업부문에서 공통적인 영업제한 활동(수출입독점과 가격협정 등)은 UR 협정에 포함된 관세/비관세 장벽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과 시장접근의 함축성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에서 경쟁의 문제는 경쟁법에서 제외된 농업정책으로 인한 각종 가격지지 때문에 복잡하다. 예를 들면, 많은 회원국에서의 낙농정책은 시장 분할과 가격담합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EU 경쟁정책을 예로 들면, 경쟁규칙의 적용은 1차 가공을 위한 산업까지의 파급효과를 포함한 농가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농산물이 가격지지 영역의 단계를 넘으면 가격고정과 시장분할은 금지된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경쟁법의 적용에서 농업부문은 특별취급되거나 예외 되는 경우가 많으며, 농업협회와 협동조합의 유통협정들은 대부분 특별취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담배와 과일 생산자/가공업자 협회가 해당상품을 수매하고 방출하는 농협협정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에서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법은 농업과 원예생산자 조합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가격고정을 포함하여 생산자간에 폭 넓은 협력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농업협회의 회원간의 많은 유통협정을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의 틀에 기초하여 농업분야에서 경쟁정책의 포함 범위를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경쟁법이 시행된 예는 많이 있다. 즉, 1992~94년 기간 중에 나타난 예를 보면, EC 위원회는 제초제의 제조업자가 영역보호를 분배자(Distributor)에게 허용한 것은 경쟁법 위반 이었다고 판정하였으며, 뉴질랜드에서는 6개의 신선우유회사가 신선우유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최소의 향이 첨가된 우유와 경쟁을 방지하려는 것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기소하였고, 미국 법무성의 독점방지국은 지역적 우유가격고정에 대하여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채소재배업자협회가 무순(radish sprout) 재배에 관한 지적재산권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무순의 수급을 조절하고, 우월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몇 개의 농협조합이 이름 있는 쌀의 가격과 수량에 대한 공매에서 도매업자에게 압력을 가한 데 대하여 조치를 취하였다.

3.3. 농업정책과 경쟁정책

농업분야에서 경쟁정책 문제는 크게 볼 때, 효율과 국제경쟁, 경쟁과 농정개혁, 무역자유화와 시장접근, 그리고 수출입협정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3.1. 효율과 국제경쟁

경쟁문제와 관련한 효율은 인수와 합병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농업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합병/인수 활동이 있었다.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경쟁정책은 효율적인 기업 관행, 특히 합병과 인수와 관련한 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다. 합병과 인수가 규모의 경제, 시너지(synergies) 또는 다른 방법으로 비용감축을 상쇄한다면 합병과 인수는 전체후생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efficiency gain을 얻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은 국제경쟁에서 기본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경쟁정책 시행에 총후생접근(Total welfare approach)을 가져왔고, 대부분의 경쟁당국은 일부 조건에서 전체적인 경쟁의 제고를 위하여 반경쟁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인수와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많은 합병제안을 경쟁당국에 승인 요청 시에도 이와 같은 efficiency defence를 사용하고 있다.

합병이 효율성 제고를 가져온다는 가설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벨지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및 미국 등 7개국의 합병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윤과 성장증가로 나타난 합병이 경제효율을 제고시킨다는 결론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방법론적 한계 즉, 조사기간이나 하나의 큰 합병자를 검토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합병과 efficiency gain간의 연계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볼 때, 합병과 인수는 국제경쟁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경쟁시장의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은 경제효율과 연계된 더욱 넓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증진시키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쟁정책은 중소기업의 진입, 생존,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혁신과 경쟁정책간의 연계성도 검토되고 있다. 기술개발과 혁신은 어떠한 산업이든 성장의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연구, 교육 및 기술이전에 대한 우선순위는 높다.

국내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외국시장에는 보조된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국내시장에서는 경쟁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이용하는 국제가격차별을 통하여 국제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국제경쟁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의 강도간에는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정책의 효과 때문에 경제전체로 본 국제경쟁은 기업수준에서 본 국제경쟁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국가보조하에서 판매되는 것은 국제경쟁의 지표로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경쟁은 정부개입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예로서, CAP하에서 개입구매용 버터와 탈지분유 및 치즈를 생산하는 EU 낙농조합은 가공업자이나,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소비자/납세자에 대한 비용은 높은 편이다.

농정의 이전효율도 경제효율과 관련되어 있다. 이전효율은 편익이 의도된 수령자에게 이전하는 크기와 관련된다. 식품망의 일정 지점에서 농정과 관련된 경제지대의 포착 및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의 창조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 사무국이 행한 최근의 작업에 따르면, 농정의 이전효율은 대단히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이전효율은 후방산업의 불완전 경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농정개혁은 경쟁법의 적용을 포함한 보완적인 조치 또는 효과적인 경쟁을 보증하기 위한 다른 종류의 규제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3.3.2. 경쟁과 농정개혁

산업 특정적인 정책의 효과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경쟁정책은 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개선시킬 수 있다. 농업정책과 경쟁정책간의 관계가 대부분의 경우 명확하므로, 농업정책의 개혁은 경쟁정책의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농정개혁의 주요 목적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축소하고 변화하는 정책의 틀 내에서 경쟁적인 시장의 힘을 도모하는 것이다. “경쟁”의 많은 문제가 이러한 개혁 구상과 관련되어 있다.

회원국간에 농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역할을 재고하고 있는 것은 국제무역정책의 변화(UR 협정의 이행효과), 지역통합구상(EU 확대), 예산, 산업의 세계화 및 기술변화를 포함하는 많은 압력들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쟁위원회는 대부분의 식품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못함을 발견하였으며, 농산물의 경쟁규범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생산자 조합이 1차 가공을 지배하고 있었고, 조합 밖의 시장은 1개 또는 2개의 주요 회사들이 통상 지배하고 있으며, 가격담합도 있었다. 따라서 수직가격담합, 시장분할, 규제 받지 않은 유통위원회 등과 같은 비경쟁적 행위를 제한하는 식품부문을 위한 특별 법률이 시행되었다.

농정개혁과 경쟁정책간의 또 다른 예는 영국 우유유통위원회(Milk Marketing Board)를 들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생산자로부터 우유를 구매하는 유일한 구매자였으며, 가공업자에게 판매하는 유일한 판매자였다. 1994년 하반기에 유통위원회의 해체와 함께, 생산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우유에 대하여 값을 결정해야만 하였다. 생산자들은 가공업자와 협상시 시장력의 손실을 우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 소유의 조합(Milk Marque: 영국 우유 판매의 50% 이상을 점함)을 설립함으로써 생산자들은 시장력을 유지하였고 생산자가격도 크게 상승하였다. 정부는 시장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할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Milk Marque는 시장력을 남용할 경우 경쟁법과 독점 및 합병위원회의 조치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생산자 조합은 그 자체가 경쟁문제이다. 생산자 조합은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중개자로 정당화될 수 있고,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처럼 생산자 조합은 농민의 이익이 소비자의 이익 및 전체적인 경제효율과 충돌할 정도로 그 힘이 성장하였으며, 경쟁은 감소하였다. 농정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조합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시장에서

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 조합은 가격고정, 시장분할, 산출물 제한 및 기타 비경쟁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EU 경쟁법에서 조합은 비록 Regulation 26/62가 농산물에 제한된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농정개혁과 경쟁정책간의 연계성에 관한 또 다른 예를 캐나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쟁정책위원회는 농업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농식품산업의 경쟁에 관한 2개의 연구를 위임하였다. 첫째 연구(1994)는 경쟁의 결과에 대하여 추론하고 농업정책을 검토한 것이었고, 두 번째 연구(1995)는 농정개혁의 최근의 전개과정 즉, 공급관리체계의 변화, 규제개혁, 서부곡물운송보조금의 철폐 등을 경쟁의 효과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들은 농식품산업에서의 경쟁은 공공정책으로 제한되어 왔으며, 경쟁법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3.3. 무역자유화와 시장접근

무역장벽의 제거가 시장접근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을 왜곡시키는 장벽이 점진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외국인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관행과 차별적인 투자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의 OECD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국영기업의 상행위를 포함한 사업관행이 국경조치보다 시장접근에 대한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경쟁법 위반으로 발견된 농식품분야에서의 사업관행도 인용되었다.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국내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경쟁위치를 보호하고 외국경쟁자의 접근을 제약하려는 조치들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을 충족시키는 행위와 접근 방해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이러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지방구매자에게 할인과 같은 가격차별의 형태는 외국기업과의 거래를 방해함

- 외국경쟁자를 차별하는 협회의 배타적 행위
- 지방 제조업자들의 수직적 통합

3.3.4. 수출입 협정

독점수입/수출권을 갖고 있는 국영무역기업, 정부가 승인한 민간의 수입/수출 카르텔, 자발적 수출제한 및 자발적 수입확대 협정들은 시장접근과 외국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에 대하여 경쟁당국과 무역당국의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경쟁과 무역정책이 점점 더 통합되고 있고 경쟁정책의 수렴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쟁자는 농식품분야의 수출/수입 협정에 대하여 시장접근 측면에서 관심이 높다.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대체하는 수출협정도 경쟁정책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이러한 협정이 교역조건을 제고하고 국제수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예: 아주 왜곡된 농산물 시장에서 독점적 수출업자가 차별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단기적 국가 후생목표와 일치할 수 있으나, 세계의 경제후생 극대화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UR 협상의 결과 공식적으로 승인된 자발적수출제한(VER)은 금지되고 있다. 다자간 규칙에서 이러한 개선으로 인한 편익이 정부협정이 민간의 VER로 대체될 경우 손상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관심이 있다. 세계시장의 상당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카르텔은 특정시장에 대한 판매 제한을 시도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협정은 이 협정을 회피하려는 유인과 함께 불안정하다. 자발적수입확대(VIE) 협정은 현존하는 무역장벽 또는 경쟁장벽을 중화함으로써 시장접근을 증대하고, 특정국가가 목표한 시장 몫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관리무역은 증가하고 수입국과 수출국에서의 카르텔화 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비교우위에 기초한 자유무역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입과 수출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갖고 있는 국영무역기업

(예: 캐나다의 밀 위원회, 뉴질랜드의 낙농위원회):

-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갖고 있는 국영무역기업

(예: 일본의 축산물 유통사업단)

- 자율규제

(예: 쇠고기에 대한 미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간 자발적 수출제한 협정).

뉴질랜드 낙농위원회는 국제낙농시장에서 주요한 공급자이지만, Price-taker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거래자인 EU와 함께, 세계 낙농품가격은 수출상환(export restitution) 수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설정되며, 위원회에 대한 차별적인 댓가(보수)는 국가독점 행위보다는 오히려 정부개입으로 설정된 다른 수준의 지지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 밀 위원회와 호주 밀 위원회는 미국과 EU의 수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 몫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자신을 Price-taker라고 보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수입협정과 관련된 시장왜곡은 제도적인 협정보다는 정책 수단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는 농업가격 지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국내생산자가격은 다양한 수입규제를 통하여 세계가격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중 많은 것이 UR 협정에 반영되어 수정되고 있고, 무역에서의 단기적 변화는 적을 것이다.

UR 협정이 농산물의 시장접근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수입제한은 예상할 수 있는 기간동안 회원국에서 농산물 지지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UR 규정의 일부 개선된 시장접근을 갖고서도 관세할당 협정의 관리는 시장경쟁분야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

3.4. 향후 전망

OECD 회원국의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보완수단으로서도 그 기능이 뚜렷해지고 있다. 경쟁정책의 대부분이 시장력과 경제효율의 국내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무역측면은 경쟁정책의 범주를 확대하고 회원국간 경쟁정책에 관한 수렴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 회원국간 합의된 농정개혁의 주요 원칙중의 하나는 시장지향도의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더 자유로운 무역이 자동적으로 공정무역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농업정책의 이전효율성(transfer efficiency)에 관한 사무국의 작업에 따르면, 개혁의 편익을 파악하기 위한 범주는 넓다는 것이었다. 시장에서 정부개입을 축소하려는 농정개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경쟁을 보증해야할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농정개혁에 따른 최근의 경험에 따르면, 과점시장구조와 비경쟁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규제완화로 인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쟁과 무역 및 투자정책이 점점 더 통합 됨으로써 수출입 협정, 자발적 제한, 표준, 지적재산권, 투자제한 및 기타 경쟁과 관련된 무역장벽에 관한 더 많은 규율에 대하여 압력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예외 및 특별규칙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들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정개혁과 경쟁정책의 보완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위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UR 협정의 이행 등으로 국제경쟁에 노출이 증가됨으로써 농업분야 특히, 농업생산에서 경쟁정책으로 부터 제외된 현재의 조항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 무역과 경쟁정책을 연계하는 토의를 통하여 국내경쟁법이 농업부문에 부여한 예외와 특별취급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을까?
- 농업분야에서 경쟁정책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가?

경쟁법에서 농업부문의 취급과 이 취급의 무역에 대한 의미는 경쟁법정

책위원회와 무역위원회에 의하여 case study로서 제안되었다. 제안된 주요 문제는 국내농업정책의 관점에서 농업분야의 수출 카르텔의 역할과 중요성, 기타 정부 및 민간의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분석 등이었다. 그리고 식량농업수산국은 경쟁정책 및 관련된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며, 농업 분야 전체에서 정책과 조정에 관한 확대된 작업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통합시킬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의 논의는 경쟁규범을 정립하는 것이었고, 향후에는 국제경쟁규범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양자간 협조의 증진과 공동의 경쟁기준을 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토의가 계속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국제경쟁규범의 제정과 다자간 협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논의의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국제경쟁규범의 제정과 다자간 협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이유중의 하나가 경쟁문제는 경제적 요인만이 아닌 문화적,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다자간 투자 협정(MAI)

4.1. OECD의 다자간 투자 협정 추진과 전망

국제투자는 세계경제의 주요한 문제중의 하나로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규제중심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투자는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이는 국제투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OECD의 국제투자/다국적기업 위원회(CIME)와 자본이동/무역외거래 위원회(CMIT)는 1994년에 투자자유화, 투자 보호, 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다자간 투자 협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보고서를 각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기초

로 각료이사회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상기 두 위원회는 협정 내용에 포함될 내용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995년 5월의 각료이사회는 1997년 다자간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 협정은 수준 높은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등을 포괄하는 다자간 국제투자의 틀이 되고, OECD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에도 개방되는 독립적인 국제조약이 되도록 협상과정에서 비회원국의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하였다. 협상의 진행은 회원국 및 EU 집행위로 구성된 협상그룹이 주관하고 있다.

다자간투자협정의 성격은 최고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지향하며, 강력한 구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협정이 추구하는 투자자유화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간섭의 최소화이며, 나아가서는 이를 철폐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국제투자에 관하여 포괄적인 규범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투자환경의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OECD와 독립된 조약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협정의 체결 후에 비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과 관련한 전망은 3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는 OECD의 협정을 WTO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며, 다음은 OECD의 협정을 WTO내에서 검토후 다자간협상으로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WTO내에서 개도국의 반대로 진전이 안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2. 농업부문에서 본 전망

OECD/농업위원회에서 다자간투자협정에 관한 별도의 토의는 없으나, OECD가 다자간협정을 추진시에는 농업부문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 규약도 농업부문과 관련이 없이 추진되었으나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중 외국인 직접투자부문은 농업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그리고 이 협정이 발효 시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간섭의 최소화(궁극적으로는 철폐)로 인하여 농업자본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논의의 전망과 대책

5.1. 전 망

OECD가 무역협상의 장은 아니지만, OECD는 무역분야의 정책적인 문제들은 포함하여 회원국의 무역수행정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OECD는 매년 회원국의 농업정책과 시장 및 무역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하고 있으며, 농업보조수준도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농업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산하의 농업정책 및 시장에 관한 실무 작업반, 무역위원회/농업위원회의 합동실무작업반, 환경위원회/농업위원회의 합동실무작업반 및 사무국의 식량농업수산물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물론,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주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이다.

특히, 농업위원회는 1997년 말 또는 1998년 초에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즉, 회원국의 의견과 농업위원회의 회의의 토의에 의거하여, 사무국은 농업각료회의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각료회의의 의제는 각료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 및 국제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이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세부적인 의제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OECD가 사무국의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에 의거하여 정책토론의 장으로서 OECD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각료급 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료급회의에서 검토할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그 내용은 OECD의 농정개혁을 가속화하는 문제와 차기 다자간협상에서 다루어질 농업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5.2. 대 책

1987년의 OECD 각료급선언에 나타난 농정개혁의 원칙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산물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하여 OECD가 WTO의 전신인 GATT의 협상의 전 단계에서 회원국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시 공동해결책과 전략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논의동향과 차기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질 농업부문의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OECD/농업위원회의 활동과 논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즉, 농업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활동과 향후 추진할 과제 등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위원회 및 농업위원회 산하의 각종 작업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우리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97년 말 또는 1998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농업각료회의는 세계농업질서의 새로운 구축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이행기간 만료 1년전에 개혁을 계속하려는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던 점과 연계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1997년 말/1998년 초로 예정된 농업각료회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OECD/농업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적극 참석하면서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육성과 OECD 활동을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OECD는 문서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문서를 생산하면서 수많은 회의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ECD와 관련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은 선결과제이다. 특히, 각종 회의에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회원국의 대표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은 중요한 일이다.

OECD 가입을 통하여 OECD가 축적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자료의 활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OECD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국제농업질서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농정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OECD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OECD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확대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조직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OECD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OECD의 농정개혁을 참조하면서, 우리의 농정개혁도 보조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OECD가 추진하는 농정개혁의 목적은 농업지지와 보호를 축소하면서, 시장지향도를 제고하고 더욱 자유로운 무역을 추진하는데 있다. OECD는 회원국의 농업지지수준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이를 더 축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지지의 형태도 가격지지로 부터 직접지불 등 예산이 뒤따르는 지원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OECD의 농정개혁 방향을 참조하면서 우리의 농정개혁 방향을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6 장

새로운 통상의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협상결과의 이행 가속화와 추가적인 자유화 논의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환경, 노동, 경쟁정책, 부패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을 무역과 연계시키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세계무역기구(WTO), OECD, 지역경제협력체(APEC, EU 등)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은 세계 경제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1986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7년 여의 협상과정을 거쳐 타결되었으며, UR협상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되었다. WTO는 세계의 주요 교역국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교역대상을 포괄하고 있다.

UR협상의 성과는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관세화, 국내보조와 수

출보조의 감축 등 주로 국경조치의 벽을 낮추는 것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의 결과는 선진국의 경우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우 2004년까지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들 사이에는 큰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 수입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가 국제 곡물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에 반해 수출국들은 협상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무역자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UR 협상의 타결로 이루어낸 무역장벽의 완화로 무역의 자유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 가운데는 각국의 국내 정책과 경제 관행 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UR협상 결과에 최종 서명을 하기 위한 마라케쉬 각료회의(1994. 4.)에서는 UR이후 공정한 국제교역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국제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슈들은 그 동안 OECD 각료이사회와 G-7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역과 환경, 노동기준, 투자, 경쟁정책 등 네 가지 의제로 압축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부패(뇌물)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WTO의 각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도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이 새로운 라운드의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우루과이 라운드의 경험을 살려 보다 단기적으로 마무리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논의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 농업분야에 또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들 새로운 이슈들은 WTO 출범 이후 논의되고 UR협상 결과의 가속화 및 지속적 개혁 논의와 함께 WTO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향후 새롭게 형성될 국제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상에 의한 논의이든 WTO의 해당 위원회를 통한 논의이든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협상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새

로운 논의에 대한 이해와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5대 의제별 성격과 논의 과정, 각국의 입장 등을 중심으로 동향과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무역과 환경

최근 각국의 경제개발 특히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구 환경의 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경제 성장은 지속되어야 하나 환경 또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염화불화탄소(CFC, 프레온가스)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 급증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 각종 동식물의 재생능력 저하와 멸종 등은 인류의 번영과 지구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환경 파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지구 환경의 보존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적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생산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환경을 해치면서 생산된 제품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게되며 결국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물리거나 교역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가 국제적으로 적용되게 되면 국제 교역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환경 친화적 기술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의

상품 교역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또한 지금까지 자유무역과 이를 통한 국제 교역의 확대를 지향해온 WTO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인가에도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OECD, APEC 등에서도 활발히 토의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환경문제가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의 발동이나 비관세 장벽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자간 협의를 도출하여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와 교역이 연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첫째, 환경보호와 개발권의 보호라는 상반된 명제의 조화 둘째,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협약 체결 셋째, 장기적 환경보호 대책으로써의 환경과 무역과의 연계 등을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의 보호나 개발이냐의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선진국은 환경보호가 우선 이라는 입장이나 개발도상국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은 선진국이었음을 들어 생존을 위한 개발우선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992년 6월 리우의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에 의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이 합의된 바 있다. 여기서 리우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설립되어 유엔의 환경관리를 위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국들간의 이견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은 부족한 상태이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협약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130여 가지가 체결되었으며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18개에 이른다(최영진외 1995). 중요한 협약들로는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런던뎀핑협약, 야생동식물보호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이 있다. 환경협약은 오염물질의 사용 및 교역 규제,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보호,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전자 보호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행위의 규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 환경협약은 규정위반국가와 협약 비가입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또는 규제조항을 두고 있어 각국의 교역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환경보호를 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이라는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 리우선언 이후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OECD, UNCTAD,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CSD,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1995년 1월 정식으로 발족한 WTO 무역환경위원회는 마라케쉬 각료회의 당시(1994. 4. 15.)의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WTO 각료회의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UR협상 종결 당시 위임받은 10개의 의제를 검토해왔다. 동 위원회는 그 결과를 1996년 12월 WTO 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 초안은 1996년 7월에 배포되었으며 일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12월 각료회의에 제출된 바 있다.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 온 10개의 의제 가운데 농업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의제3과 의제6으로 볼 수 있다. 의제3은 주로 환경세와 환경관련 기술요건과 관련된 논의이다. 환경세 문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세 제도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시행 정도에 따라 수입품에 대하여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하여는 환경세 수준 결정의 기술적 문제, GATT 정신 또는 규정과의 문제 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이해당사국들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경관련 기술요건과 관련하여서는 GATT 규정과 표준 및 기술 관련 규정, 포장, 환경표시, 재활용 등 환경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제품의 수명 평가,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장벽, 동식

물 검역, 환경마크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의제6은 환경관련 조치들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들의 시장 접근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장벽의 제거로 인한 환경적 이익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무역장벽의 제거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보호 목적의 강력한 각종 정책들이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보호 목적의 각종 규제를 다자간무역협정(WTO협정)의 틀 속으로 수용하여 공정한 경쟁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비용은 선진국이 부담하고 개도국은 이에 무임승차한다는 시각도 가지고 있어 강력한 환경보호적 국제규범의 제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쟁력 유지목적의 보호무역주의적 발상으로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술 등 환경 관련 지원과 WTO 규정내에서의 특별대우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조류를 감안할 때 국내적으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향후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국제경쟁력 확보와 환경관련 무역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환경관련 기술투자 및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준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오염 산업에 대해서는 오염배출량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마크제, 환경상계관세, 각종 환경 관련 부과금 등 환경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무역규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약을 타결시킬 수 있도록 외교-통상 차원의 노력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국제적 논의가 지구환경의 보호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 입장에 있으나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개도국에 오히려 가까운 실정을 감안하여 과도한 경제적, 통상적 부담을 지우는 환경협약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을 협약에 대하여는 선도적 입장을 견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OECD 가입과 관련하여서도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일차적으로 인접국가들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지역적인 환경관련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ESCAP 환경협력 정부간 회의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논의를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과 관련된 기술협력, 상호 이해 증진, 다자간 협상에서의 공조체제 유지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투자자유화

세계경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이에 따른 경제논리의 중요성 증대 그리고 개방화 등에 힘입어 개방경제 체제하에서의 국제경쟁력 증대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1970~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개도국들은 외채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들은 개도국에 대한 상업차관 제공을 자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도국들의 외채 위기는 국제경제의 호조 등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이후 외채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관들의 상업차관 규제

와 경기호조는 개도국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유인정책으로 이어져 개도국들은 재원조달을 위한 수단으로써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에 따른 국제시장의 단일 시장화는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기지를 이동시키는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한 지역경제체제내의 논의와 다자간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EU, NAFTA, APEC 등 지역주의 차원에서의 투자자유화 논의, UR 투자자유화 협정, OECD 투자협정을 비롯하여 미-일, 미-EU간의 투자자유화 협상 등 국제적 투자자유화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UR협상을 통해 무역관련 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협정, 서비스협정 등이 제정되었으나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자본흐름을 규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투자보호, 투자자유화, 투자 관련 분쟁해결 등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OECD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공산품 교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자활동 즉 유통기반시설,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및 문화시설 등과 관련된 투자활동의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협상과 함께 개도국을 포함하는 세계적 다자간 규범 제정을 위해서 WTO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OECD에서는 구체화되었으나 이를 WTO에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 규약과 국제투자과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은 내국민대우, 다국적기업의 영업행태에 관한 지침, 회원국간 상충되는 규정 적용의 자제, 투자유인 및 제한 조치에 관한 상호협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절차, 정기적인 검토(3년마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OECD 투자규범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나 점차 관습법적인 법규범으로 발전하여 회원국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영진 외 1995). OECD는 UR이후 다자간 투자협정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다자간투자협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GATT 규정내에는 국제투자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UR협상에서 무역관련 투자조치의 형태로 부분적인 투자관련 규율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도국들의 반대로 선진국들이 주장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투자규범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투자규범의 제정을 UR 이후 최대의 무역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WTO 협정에 의하면 TRIMs는 WTO협정 발효후 5년 이내에 규정의 보완 여부에 관한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EU, NAFTA, APEC 등 지역경제체제에서도 투자자유화에 관한 규범이 제정되어 있으며 점차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어 다자간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NAFTA도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 자유화 범위, 투자수익 송금자유화, 투자기업 임원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 등의 규범을 마련해 놓고 있다. APEC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투자규범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APEC의 선언은 비록 비구속적인 권고적 규범이나 향후 다자간협상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투자규범의 제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국제적 투자규범의 제정을 WTO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EU,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반대하는 국가들은 인도,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이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이다.

1995년 11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APEC이 1996년 12월에 개최되는 제1차 WTO 각료회의에 의제별로 APEC의

입장을 공동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에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과 투자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APEC에서는 각국의 경제, 무역,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권을 가진다는 기본원칙을 전제로 내국인 대우 투자제도의 투명성 보장 등 12개항의 비구속적 APEC 투자 원칙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구속력을 가지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에 대하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은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을 참고하여 WTO 차원의 협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UR협정의 이행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태에서 투자유치국의 이익을 무시한 내국민대우 원칙 등을 포함하는 다자간 규범의 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진전될 경우 외국 기업의 회사설립권, 내국민대우 보장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결국 WTO 차원의 논의를 위해서 이번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4. 무역과 경쟁정책

UR협상의 타결로 관세, 비관세 등 대부분의 국경보호조치는 폐지 또는 완화되었으며 이제 실질적인 시장접근 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시장구조, 기업관행 등에 관한 다자간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무역과 경쟁정책의 연계는 국가마다 상이한 국내 경쟁조건을 형성하게 하는 법규와 관행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려는 것이다. 경쟁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반경쟁적 행위는 입찰담합, 덤핑, 독과점, 가격차별 등이 있다. 기업은 카르텔, 기업합병, 독점적 지위남용 등을 통해 이러한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업간의 계열하청, 시장담합, 생산량조절 등에 관한 규범들과 독과점규제법 등이 국제적으로 일치되어야 공

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투자와 무역자유화의 증가로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가 무역분쟁과 왜곡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영향을 받고 있는 당사국의 관할권밖에 있는 이러한 기업의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 밖에 일부 국가의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조장하는 정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적 국경조치의 무역장벽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경쟁적 기업활동과 국내 산업정책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UR이후 이러한 경쟁 제한적인 기업활동과 산업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GATT 창설 당시에도 이미 논의되었으나 경쟁조건의 국제적 조화가 국내 산업정책 수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국제 규약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 독일, EU 등 양자간 및 지역협정간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각국 경쟁정책의 조화 문제와 무역과 관련되는 경쟁정책의 개념 또는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영토외(Extra-territorial)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마찰을 해소하자는 시도이다. 이는 각국의 경쟁정책 관련 제도의 차이, 주권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분야에 속한다. OECD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논의는 타분야에 비해 부진하였다. OECD의 경쟁정책 관련 규정은 경쟁규범의 적용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는 7개의 비구속적 권고조항이 있을 뿐이다. OECD에서는 경쟁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업합병에 관한 심사절차의 통일, 경쟁정책 위배적 기업결합 행위 등에 관한 규정의 통일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국제무역과 경쟁정책의 연계성은 1948년 국제무역기구(ITO) 헌장에 도입되었으나 ITO의 발족이 무산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UR협상의 타결 등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국제투자가 시장접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내의 정책과 법규, 관행 등 경쟁정책과 관련된 규범의 통일이 공정한 경쟁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기업활동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법적용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GATT는 GATT 규정에 합치하더라도 경쟁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GATT 규정의 위반으로 해석하는 정도로 경쟁관련 규정을 운용하여 왔다. WTO에서는 이러한 GATT의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일부 규범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조달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서비스협정, Safeguard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등에 제한적이나마 경쟁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무역과 경쟁정책과의 문제는 아직 초보적인 논의 단계에 있다. OECD를 통한 개념정립과 논의를 통해 선진국들의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WTO 등 다자간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과 관련된 경쟁정책의 논의가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상호연계성에 관한 개념자체가 불분명하고 국가간 협력체제 또한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논의는 OECD와 양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인 이슈화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시장개방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거래관행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간의 무역구조조정 협의를 통한 일본시장 개방의 노력이 일본의 거래관행 때문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의 논의를 국제화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ECD에서는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OECD의 연구는 국내 기업의 수평적 협정, 수직적 협정, 유통체제 등이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업간 수평적 협정 즉,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된 카르텔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수출 카르텔의 가격 및 물량조절과 입찰조작 등의 경쟁제한적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수직적 협정은 부품조달과 제품판매를 위한 제조업체간의 협정이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유통체제와 관행에 있어서는 정부의 허가제도, 자격요건 등이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외국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의해 제한될 경우 관련 외국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독과점금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쟁정책의 개념이 기존의 WTO 규범내에서 보다 강화된 형태로 도입될 것인지 또는 국별 국내법과 관행의 통일을 통한 형태로 논의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WTO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이러한 논의는 WTO 자동협상 의제에 관한 논의로도 충분하며 싱가포르 각료회의 의제로 상정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기구를 설치하라는 선에서 타협을 이루었다.

미국과 OECD의 경쟁정책에 관한 대응으로 경쟁정책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WTO의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국별 기준의 통일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국내 시장조직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독과점금지법을 국제규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교역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의 무역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제정되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5. 무역과 노동기준

UR협상의 타결로 국경조치는 철폐 또는 완화되었다는 인식하에 공정한 국제 교역을 위해서는 이제 국제무역을 규정하는 국내 경쟁조건들의 형평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무역과 근로조건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1880년 제정된 미국의 최수노동을 이용한 상품의 수입금지, 하나바현장, ILO 현장 등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논의가 국제적인 이슈로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노동기준을 벗어난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국제교역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논리로 일부 선진국들의 실업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들이 제기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낮은 근로조건하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는 사회적 덤핑으로 불공정한 무역으로 간주하여 무역제재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선진국들 내에서도 국별로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초보적인 논의 단계에서 노동기준 또는 근로조건의 개념 설정에 관한 논의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노동기준은 국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로 기준의 설정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누구나가 공감하기 쉬운 내용인 강제노동, 유아노동, 결사의 자유 등 기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착취하면서 국제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권은 보장해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1970년대에 카터행정부의 인권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노동자의 권리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게파르트 의원의 입법화 추진으로 공식적으로 거론되

기 시작하였다. 유럽국가들 가운데서는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노동문제의 다자간협정을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의 실업문제를 완화시키고 저임금 활용을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선진 국내부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초보적인 사회보장제도만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15세 이하의 아동노동, 죄수노동, 강제노동의 금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무역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이다. 이들은 근로조건의 선·후진국간 차이를 인정하지만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은 누구 나가 준수하여야 할 절대적 노동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ASIAN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선진국들의 내부적인 실업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으며 국제무역을 저해하고 고용창출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은 WTO 체제하에서의 자유무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선진국들은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과 무역과의 연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논의를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ILO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무역제재와 각국의 상이한 국내 노동관련 법규들을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논의는 새로운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동에 관한 이슈는 환경문제와는 달리 언제, 어떠한 형태로 다자간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에 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들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마라케쉬 각료회의와 ILO 총회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개도국들은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가운데 개도국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경제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국제적 규범으로 제정하여 규율하고자 할 경우 여기에는 내정간섭적, 주권침해적 요인이 내재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의 반대는 이러한 논의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OECD는 노동인권의 신장이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노동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ILO와 WTO간의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우선 최수노동과 아동노동 등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거론하여 논의의 기틀을 형성하고 점차 노동자의 집회와 결사권 보장 등 일반적인 노동자의 권리 문제로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제무역과 노동문제가 연계된다면 단기적으로 중국 등 후발개발도상국의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노동조건이 ILO의 기준에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분야의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다. 노동관련 규범을 국제적 수준에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무역과 관련시켜 WTO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우선 ILO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노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무역제재 등 강행수단의 도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방향에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국제교역자유화 간의 연계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미 WTO 상정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이 의제가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지적할 정도이

다. 그러나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들은 무역과 노동 문제를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SEAN 등 개도국들은 WTO에서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도국들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ILO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ILO에서 다루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ILO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국내 노동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의 이해 증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최수노동에 의한 상품교역에 대한 제제조치는 GATT 제20조 e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핵심 사항들은 현재의 규정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의 무역과의 연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의도에는 무역제재를 위한 목적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6. 무역과 부패문제

국제적 계약에 있어서의 뇌물수수 등 부패적 관행이 기업간, 국가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무역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자간 무역규범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G-7 정상회담에서는 국제거래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저해하고 과중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유발하는 뇌물수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OECD를 통해 실효성 있는 뇌물 제재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정부조달 분야의 부패적 거래 관행의 철폐를 위해서 정부조달협정을 현재의 양자간협정에서 다자간협정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WTO 의제로 제기(제2차 APEC 통상장관회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들은 부패문제는 무역외적 문제로 이러한 의제가 WTO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계약과 입찰과정을 둘러싼 뇌물수수와 부패관행을 없애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패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WTO 각료회의 의제로 거론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어 우리의 OECD 가입을 전제로 할 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무역제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통상산업부 등 정부의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 업계, 연구기관 등을 연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7. 전망과 대책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통상문제들은 지금까지의 문제들에 비해 각국의 국내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협의와 노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이 이러한 의제를 자신들의 주도권하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개도국들의 반발로 새로이 출범한 WTO 체제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진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정비용을 감소시키고 관련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협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각국은 모두 무역자유화라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의제, 자유화 속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사회, 문화적 관행과 관련이 깊은 새로운 의제들과 관련하여서는 개도국들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예를 들면 APEC은 회원국 공동의 의견을 WTO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

으나 이에 대한 진전이 없이 회원국간의 이견조정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다자간협정의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가 협상에 회부되기 이전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APEC, OECD등 국제기구와 지역경제협력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WTO 각료회의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도국의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입장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WTO의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를 하나의 틀 속에 통합하고자 하는 다자간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국내법과 규범을 국제적인 협정에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통상마찰을 줄이고 국내 자원을 국제적 추세인 단일 시장화에 맞게 배분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UR협상 타결 이후 각종 보조금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검역법,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을 개정하여 WTO협정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공무원 조직은 주로 일반 행정직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순환보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분야에서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이는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통상 및 협상 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제도이다. 통상협상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WTO 사무국에 현재 한국의 전문가는 4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전문가 양성을 통해 이러한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보수집과 한국의 입장을 반영

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WTO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의제에 관한 논의는 금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대략적인 방향과 의제가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WTO의 각종 위원회와 OECD, ILO, FAO 등 국제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논의에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 7 장

전망과 대응방안

1. 전 망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GATT의 기능을 보완한 보다 강력한 다자간 무역체제로서의 WTO 출범으로 다자주의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도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주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EU, NAFTA, ASEAN, APEC 등 지역주의도 강화되고 있어 세계 경제의 조류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로 양분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WTO 출범 이후 이러한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UR 협상으로 일단락되었던 농산물무역 자유화가 다시 어떠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지전될 것인가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업부문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전망, 대응방안 등을 WTO 농업위원회, APEC, OECD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지역주의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는 쉽게 정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GATT 24조 조항을 통해 지역협정이 다자주의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항의 구구한 해석 때문에 지역협정이 GATT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1995)보고서는 다자주의와 관련하여 지역주의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APEC이라는 느슨한 지역협력체를 제외한 모든 지역주의의 역외국으로서 폐쇄적 지역주의의 피해를 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의 발전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지역주의 확산과정을 볼 때 경제대국들은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그리고 소국들은 안전한 은신처(safe haven)로서 지역주의에 가입할 유인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지역주의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지역주의 발전전망을 간단히 두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보면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를 보완 발전시키는 경우와 다자주의가 제기능을 못해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상충할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역주의가 전자로 진행된다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양자가 해왔던 것처럼 상호작용을 계속할 것이며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무역자유화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지역주의는 새롭고 복잡한 경제정책문제를 다루는 실험장의 역할을 해온 반면 다자주의는 MFN과 호혜주의에 기초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진 많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상충할 경우 각국은 새로운 이슈에 대해 지역주의적 해결책에 의존할 것이며 지역간 경쟁적인 규범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룰은 무역관계에 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다자주의가 이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다자주의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지역주의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전망

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지역주의들이 심화, 확대됨은 물론 각 지역주의 간의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과 WTO에서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역주의 문제가 다자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심은 WTO협정의 완전한 이행이며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경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 새로운 발전, 즉 다양한 협정의 성립 또는 지역주의의 확대, APEC의 진전 등에 따라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발전방향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 WTO 농업위원회

WTO 농업위원회는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점차 협정문의 해석과 관련된 까다로운 문제로 이전되어 갈 전망이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증가될 전망이다. 첫째, 협정문과 국별 이행계획서의 해석상 모호한 점, 둘째, 관세할당량의 할당과 수출보조금의 배분 방법, 셋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간 비대칭적 규칙(예, 삭감폭과 기준연도가 다른 점, TE 계산과 AMS의 참조가격 상이 및 Special safeguard 조항 발동시 다른 참조가격 사용 가능) 등이다. 농업개혁의 지속과 관련된 협상은 국내보조 문제, 고율 관세 문제, 예외 조항의 지속성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자동협상 의제는 협상의 시기문제를 놓고 케언즈 그룹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과 한국, 일본 등 수입국들의 입장이 대립한 바 있다. 1996년 7월에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선진국들의 UR협정의 조기 이행(가속화)을 위한 준비작업 개시 주장에 대해 개도국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자동협상 의제는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 섬유 및 의류 분야 등 타부문과도 관련되어 있어 타부문과 일관성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논의 시기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써 결국 협정문에 나타난 일정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1.3. APEC

1996년 11월 필리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마닐라 실행계획(MAPA)은 APEC의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2010년 또는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보고르 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계획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18개 회원국 모두가 동시에 이행을 개시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구속력을 갖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닌 자발적 협의(Consultation)와 일방적인 이행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크며 WTO 체제하의 세계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MAPA는 상호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회원국들의 자유화 추진 노력이 약화되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UR 협정에서 양허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는 국가 외에는 취약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다른 회원국들의 상응한 자유화 조치를 유발하기 위해 형평성(Comparability)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실행계획의 초안(Draft)보다 오히려 후퇴한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6년은 MAPA가 채택되고 1997년 1월부터 동시 이행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더 큰 탓에 각국이 다른 회원국들의 실행계획(IAP)에 대체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MAPA의 성격이 고정적(Fixed)이 아니라 매년 또는 협의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가변적 특성(Rolling Nature)을 갖기 때문에 이행이 개시된 후에도 추가적인 자유화 압력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의 농산물 무역자유화 문제는 1995년의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에 근거하여 1996년 8월 설립된 식량작업반(TFF)의 분석결과가 향후 무역자유화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동 선언문도 APEC 역내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식품의 생산, 소비, 교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협조할 것을 명시하

고 있다.

1.4. OECD

OECD가 무역협상의 장은 아니지만, OECD는 무역분야의 정책적인 문제들은 포함하여 회원국의 무역수행정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OECD는 매년 회원국의 농업정책과 시장 및 무역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하고 있으며, 농업보조수준도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농업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산하의 농업정책 및 시장에 관한 실무 작업반, 무역위원회/농업위원회의 합동실무작업반, 환경위원회/농업위원회의 합동실무작업반 및 사무국의 식량·농업·수산국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물론,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주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이다.

특히, 농업위원회는 1997년 말 또는 1998년 초에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즉, 회원국의 의견과 농업위원회의 회의의 토의에 의거하여, 사무국은 농업각료회의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각료회의의 의제는 각료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 및 국제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이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세부적인 의제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OECD가 사무국의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에 의거하여 정책토론의 장으로서 OECD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각료급 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료급회의에서 검토할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그 내용은 OECD의 농정개혁을 가속화하는 문제와 차기 다자간협상에서 다루어질 농업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새로운 통상의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통상문제들은 지금까지의 문제들에 비해 각국의 국내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협의와 노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이 이러한 의제를 자신들의 주도권하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개도국들의 반발로 새로이 출범한 WTO 체제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할 수도 있다. 각국은 모두 무역자유화라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의제, 자유화 속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사회, 문화적 관행과 관련이 깊은 새로운 의제들과 관련하여서는 개도국들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예를 들면 APEC은 회원국 공동의 의견을 WTO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진전이 없이 회원국간의 이견조정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다자간협정의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가 협상에 회부되기 이전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APEC, OECD등 국제기구와 지역경제협력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WTO 각료회의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도국의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입장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WTO의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를 하나의 틀 속에 통합하고자 하는 다자간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2. 대응방안

지역주의의 진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국민경제의 한부분인 농업도 예외없이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깊이 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 (1) UR에서 한국이 취한 것처럼 기초식량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 회원국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이 지니는 고유한 역할로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개발,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해 일정수준의 농업유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보호는 수입수량제한에 의해 대부분이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위생 및 검역, 표준 및 적합성, 원산지 규정 등과 같은 제 2차 기술적 장벽에 대한 기술과 인력, 장비와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의 통상마찰은 위생 및 검역 등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협정은 다자협정에 앞서 실험무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표준 및 적합성 분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위생 및 검역분야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 (3)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는 각국 경제의 전문화를 의미하며 전문화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경제 또는 산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국제경쟁 격화는 한국농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경쟁력이 있는 부문으로 흡수되어 전문화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살아 남을 수 있는 몇가지 부분을 선택적으로 키워나가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농업내에서도 어느 분야가 동태적인 비교우위를 가지는가에 따라 어느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에서의 무역자유화와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의 무역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국내 법규와 정책을 국제 규범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조정비용을 감소시키고 관련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협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 (1)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WTO 사무국에 한국의 전문가 참여 확대 (현재 4명만이 참여)도 커다란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논의에 대응하고 입장이 다른 선진국과의 양자협상 병행으로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자유무역체제를 선도하고 있는 WTO에 적극적 참여하여 정보수집과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가간 쟁점에 대한 논의 수준을 향상시켜 각국 정책의 다자적인 평가를 가능케하는 제도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 WTO의 각종 위원회의 참여와 참여 기관간의 협조체제 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노력을 통해 협상력을 그대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자동협상 의제 조기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타부문과 일관성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입장을 통일하고 동조국들과의 연대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주요 의제별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쌀 관련 재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 물량 증대의 손익을 분석하여 협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때 관세화시 품질계수를 무시한 고율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일본의 재협상이 우리 나라보다 앞서는 점을

감안하여 관세율 계산 등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본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추가 자유화에 관한 논의는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감축, 국내보조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통합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인 대부분의 곡물류가 관세화되어 매우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율 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최고 한도 제한, 급속한 감축 등 일부 수출국들의 의견이 차기 협상에서 강력하게 제기될 경우에 대비한 협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초하는 경우 지적재산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표시를 인정하는 제도이나 이는 국내제도와 국제규범이 일관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표법, 원산지 표시제도,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들의 개정과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 향후 있을 SPS규정의 이행검토에 대비하고 위생 및 검역조치가 교역에 규제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역상대국이 이익을 제기할 경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검역 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문제, 위생 및 검역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과학적 근거에 의한 처리방안 강구,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물 검사기능의 강화 방안 등이 강수 되어야 한다.
- 원산지 규정의 경우 협정상의 규정은 원칙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의 구체적인 효과는 개별품목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이 작성될 부속서에 크게 의존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의 EU, NAFTA 등 지역협정에 근거해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을 품목별로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APEC에서는 이미 UR 후속 협상과 관련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이 준비 단계의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ASEAN도 자유무역지대(AFTA)의 창설을 위한 관세 인하 계획을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역내 무역자유화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APEC 역내외 무역자유화 논의에 참여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APEC의 WTO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우리 나라는 UR 협정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해왔다. 특히 농산물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관세, 비관세조치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행계획을 준수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이미 관세화 되었거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UR 협정 이행에 대한 감시와 조언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홍보하고 보다 전진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 (2) 농업기술협력(ATC) 전문가 회의는 APEC의 양대 지주의 하나인 경제기술협력(ECOTECH) 사업에서 농업부문과 관련된 유일한 회의임을 감안하여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유전공학 연구 개발, 그리고 동식물 검역과 식품 유통 및 가공은 물론 지속가능 농업기술 등을 포함한 7개 사업 분야 걸쳐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적 위치에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후진국 인력을 교육, 훈련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국익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APEC 식량작업반(TFF)은 1995년 오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 의거 역내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식품의 생산, 소비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식품수급분야의 공동간사국으로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역내 회원국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분석 결과가 향후 무

역자유화의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분석 작업 결과에 기초하여 식량수급 문제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별, 담당자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논의동향과 차기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질 농업부문의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OECD/농업위원회의 활동과 논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즉, 농업위원회가 추진 중에 있는 활동과 향후 추진할 과제 등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1997년 말 또는 1998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농업각료회의는 세계농업질서의 새로운 구축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이행기간 만료 1년전에 개혁을 계속하려는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점과 연계하여 볼 수 있다. OECD/농업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적극 참석하면서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육성과 OECD 활동을 위한 대응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OECD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OECD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확대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조직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의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다.

새로운 통상의제들은 아직은 초보적인 논의 수준에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진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정 비용을 감소시키고 관련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협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국내법과 규범을 국제적인 협정에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통상 마찰을 줄이고 국내 자원을 국제적 추세인 단일 시장화에 맞게 배분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UR협상 타결 이후 각종 보조금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검역법,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을 개정하여 WTO협정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보다 효과적으로 국내 규범의 국제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부표 1 WTO 협정별 자동협상 의제

의 제 명	해당협정	협정상 임무부여	시 기
허용보조금의 정의 검토	보조금 및 상 계 조치 협정 (8.2.a)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 관이나 연구기관에 행하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의 허용보조 인정 기준에 대해(협정발효 후 180일 이내) 검토	'96. 6
최빈개도국 및 식량 순 수입 개도국에 대한 개 혁계획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각료회의 결정사항 검토	농 업 협 정 (16.2), 동 각료결정(6)	개도국에 대한 식량지원의 계속과 특히 최빈 개도국 및 식량 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식량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매 각료회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	'96.12
무역과 환경의 다자간 무역체제조화 검토	무역과 환경 위원회 임무	CTE(무역환경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을 증진하기 위해 무역조치와 환경조치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 별적인 다자간무역체제의 이념에 조화되게 협정을 수정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적절한 권 고를 첫번째 각료회의에 보고할 의무	'96.12
수입허가 절차 협정의 이 행과 운영에 대한 검토	수입허가절차 협정(7.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적어도 매2년에 1회, 협정의 목적과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고 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	'97. 1
정부서비스 조달협상	서 비 스 협 정 (13)	WTO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협정에 따 른 정부서비스 조달에 관한 다자간협상 개최	'97. 1
지리적표시의 검토	TRIPS협정 (24.2)	TRIPS 위원회는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동 협정 22조-24조의 운영을 계속 검토하며, 첫번째 검토는 WTO협정발효일로부터 2년이내 실시	'97. 1
통보절차 및 의무검토	통 보 절 차 에 관한 각료결 정(Ⅲ)	상품무역 이사회는 WTO협정 부속서 1A의 협정에 따른 통보의무 및 절차에 대해 WTO 협정 발효후 2년이내에 검토	'97. 1
선적전검사규정 검토	선 적 전 검 사 협정(6)	각료회의는 WTO 협정 발효로부터 2년째되 는 연도말에, 그 이후 매3년마다 이 협정의 목적 및 운영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감안하 여 이 협정의 규정이행 및 운영에 대해 검토	'97. 1

부표 1(계속)

의 제 명	해당협정	협정상 임무부여	시 기
금융서비스 재협성	금 융 서 비 스 에 관한 잠정 협정	95. 7. 28. 타결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잠 정협정이 96. 8. 1.부터 97. 12. 31 사이 에 발효예정이며, 동 잠정협정상 offers를 수정, 정정하거나 MEF 제외 조치를 취하기 위한 60일 동안의 재협상 개시	'97.11
원산지규정 조화작업	원 산 지 규 정 협정(9.2)	각료회의는 관세협력 이사회와 함께 원산지 규정 조화 작업계획을 WTO 협정발효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95.2)하며, 개시후 3년 이내에 완결	'97.말
TBT규정의 검토	T B T 협 정 (15.4)	TBT 위원회는 WTO 협정 발효일로 부터 3 차년도말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3년 기간 종료시마다 상호 경제적 이익과 개도국 의 특별조항에 저해됨이 없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 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조정을 권고할 목 적으로 이 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검토	'98. 1
SPS규정의 이행검토	S P S 협 정 (12.7)	SPS 위원회는 WTO 협정발 효일로 부터 3 년후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검토	'98. 1
1994 GATT에 통합되 지 않은 품목의 1단계 통합(합계:33%)	섬유 및 의류 협정(2.8.a)	1994 GATT에 통합되지 않은 품목은 HS 단위 또는 범주별로 3단계로 통합됨. WTO 협정 발효후 제37번째 되는 달(98.1)에 회 원국의 90년도 섬유의류수입량의 17% 이상 해당 품목을 GATT 94에 통합(사,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및 의류 등 4개준의 각군으 로부터의 품목)	'96.12
반덤핑기준 검토	GATT94 6조 이행협정 (17.6)	반덤핑협정 제17조 6항의 분쟁해결과 관련 된 검토기준은 일반적인 적용 가능여부에 대 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검토	'98. 1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 협상	서 비 스 협 정 (10)	서비스협정 10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문제에 관하여 다자간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98. 1

부표 1(계속)

의 제 명	해당협정	협정상 임무부여	시 기
		고,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WTO협정발효일 로부터 3년내에 발효	'99. 1
협상권의 중소규모 수출 회원국 작용여부 검토	94 GATT 28조 해석양 해(1)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시 중소규모 수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권의 재배분을 확보하 는 데 만족스럽게 작용하였는지 여부를 결정 할 목적으로 상품무역 이사회는 WTO협정 발효후 5년후에 이 조항을 검토	'99. 1
분쟁해결규칙, 절차에 관한 전반적 검토	분쟁해결규 칙, 절차에 관한 양해 적 용 및 검토에 관한 각료결 정	각료회의는 WTO 협정 발효후 4년이내에 WTO 산하의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동검토 이후 최초 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이러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를 계속 수정 또는 종료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99. 1
동식물특허대상 검토	TRIPS협정 (27. 3, b)	동식물의 특허보장조항은 WTO 협정발효일 부터 매4년마다 재검토	'99. 1
개혁진전의 계속	농업협정(6)	회원국들은 농업에 있어서 개혁계획의 계속 에 대한 협상은 이행기간종료로 부터 1년전 에 개시할 것에 합의	'99. 1 (협상 개시)
심각한 손상 존재기준 (6. 1), 허용보조금의 정의(8), 허용보조금에 대한 협의 및 승인된 구제(9)검토	보조금 및 상 계 조치 협정 (31)	보조금 상계조치 위원회는 동협정6.1항, 8 조, 9조 규정이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5 년동안 적용된 후, 동기간의 종료이전 180 일전까지 이 규정의 적용을 현행대로든 또는 수정된 형태이든 더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 기 위하여 이 규정의 운영을 검토	'99. 6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수출경쟁력 조항 검토	보조금 및 상 계 조치협정 (27. 6)	위원회는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후 개도국에 대한 수출경쟁력 조항의 운영을 검 토(연속 2여년간 동상품이 세계무역의 3.25%이상 점유)	'99년말
TPRM 검토작업	무역정 책검 토 제도(F)	TPRM은 WTO 협정 발효후 5년이내에 무 역정책검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 동 평가결과를 각료회의에 제출	2000. 1

부표 1(계속)

의 제 명	해당협정	협정상 임무부여	시 기
구체적약속에 관한 협상	서비스협정 (19. 1)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협상	2000. 1
MFN면제조치 검토	서비스협정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3)	서비스무역 이사회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부여되는 모든 면제조치를 검토, 최초의 검토는 WTO협정발효후 5년 이내에 실시	2000. 1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 해결시 94 GATT에 규정된 형태의 제소 범위와 방식 검토	TRIPS협정 (64. 2-3)	회원국은 WTO협정의 발효후 5년간 non-violation에 근거하여 다른 회원국을 분쟁해결을 위해 제소할 수 없음. 이 기간동안 TRIPS 위원회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제소의 범위와 방식을 검토하여 이러한 권고의 승인과 기간연장을 각료회의에 제출	2000. 1
개도국에 대한 협정 적용연기(4년간)검토	TRIPS협정 (71. 1)	TRIPS 위원회는 개도국 회원국에게 부여된 4년간의 협정적용 연기가 만료된 후 본 협정 적용여부를 검토, 그 이후에는 매2년마다 검토	2000. 1
투자정책 및 경쟁정책 규정 보완여부 검토	TRIMS협정 (9)	상품무역 이사회는 WTO 협정 발효후 5년 이내에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각료회의에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 검토과정에서 상품무역 이사회는 이 협정이 투자정책 및 경쟁정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여부 검토	2000. 1
항공운송분야의 진전 사항 및 부속서의 운영 검토	서비스협정(항공운송서비스 부속서 5)	서비스무역 위원회는 이 협정의 추가적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항공운송분야의 진전 및 이 부속서의 운영을 주기적으로, 적어도 매 5년마다 검토	2000. 1
'94 GATT에 통합되지 않은 품목의 2단계 통합(합계: 51%)	섬유 및 의류협정(2. 8. b)	WTO 협정 발효후 제85번째 되는 달(2002. 1) 회원국의 1990년 섬유·의류수입량의 18% 이상 해당품목의 GATT 94 통합(사,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및 의류)	2002. 1

부표 1(계속)

의 제 명	해당협정	협정상 임무부여	시 기
'94 GATT에 통합되지 않은 품목의 3단계 통합(완전 통합)	섬유 및 의류 협정(2, 8, c)	WTO 협정 발효후 제121번째 되는 달 (2005. 1) 섬유 및 의류 분야는 1994 GATT에 통합되며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제한이 철폐됨	2005. 1
농업개혁 약속이행 진 전 검토	농 업 협 정 (18)	농업위원회는 UR개혁에 따라 협상된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을 검토	시한없음 (지속)
전문서비스분야의 국내 규제조치에 대한 권고	서 비 스 협 정 (전문서비스 작업반 권고 사항)	전문서비스작업반(WPPS)은 전문서비스의 기술적 기준 및 허가요건, 자격요건 및 절차에 대한 국내 규제조치가 무역의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며, 우선적인 분야는 회계분야임	"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보호협상	TRIPS협정 (23, 4)	포도주와 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체제의 수립에 관한 협상을 TRIPS 위원회에서 추진	"
반덤핑관세조치의 우회 문제	반 덤 평 협 정 (우회방지에 관한 각료결정)	반덤핑관세조치의 우회문제가 UR협상의 일부를 구성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음. 이 분야의 통일된 규칙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동사안을 반덤핑관행위원회에 회부함	"
국영무역통보 및 역통보사항 검토	'94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5)	1994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라 회원국으로 부터 접수된 통보와 역통보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상품무역 이사회 산하에 작업반이 설치됨	"
세계경제정책결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검토	세계경제정책 결정상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WTO의 기여에 관한 선언(5)	각료들은 세계경제정책결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WTO 사무총장이 IMF총재, 세계은행 총재와 함께 브레튼우즈 기구들과 협력에 대한 함축적인 의무를 검토할 것을 권유	"

부표 2 관세(Tariff) 분야 공동 실행계획

오오사카 행동지침의 목표	실 행 계 획
a) 전산화된 관세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구축	(단 기) - 1996년: 무역투자 위원회(CTI) 산하에 관세 데이터베이스 작업반(TDTF) 운영 및 각국의 현행 관세 관련 정보 수집 - 1997년: APEC 인터넷 홈페이지 등 민간 부문 접근 가능성토록 조치 및 각국은 국별 교역 자료 및 기타 정보를 1998년까지 관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제출 (지속 추진 조치) - 1997년-2010/2020년: 매년 변경된 관세 및 교역 관련 정보를 경신 및 WTO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무역 자료 제공
(b) 관세의 점진적 감축이 역내 교역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혹은 조기 자유화를 위한 보조를 받는 산업 (이하 '우선 산업부문'이라 칭함)을 식별	(단 기) - 1997년: '우선 산업부문'의 식별을 위해 APEC 기업인자 문회의(ABAC),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및 태평양 경제협력회(PBEC) 등 지역협의체를 통해 민간 기업 대표들을 초청하고 각국의 국내 전망을 발전시켜 WTO의 교역 및 관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 - 1998년: 관세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우선 산업부문'의 식별을 위한 분석 방법을 개발 - 1999년: 고위실무회의(SOM)를 통해 각료회의에 보고할 '우선 산업부문' 목록을 작성

부표 3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 분야 공동 실행계획

오오사카 행동지침의 목표	실 행 계 획
(a) 관세 데이터베이스에 비관세 조치에 대한 정보 수록 및 비관세 장벽과 관련 품목의 목록 작성	(단 기) - 1997년: 국별로 WTO의 양식을 이용하여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보를 무역투자위원회(CTI)와 APEC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환하며 관세 데이터베이스 작업반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에 비관세 조치를 취합시키는 방안 모색 - 1998년: 비관세 장벽 및 관련 품목 목록 작성(지속 추진 조치) - 1998년-2010/2020년: WTO나 UNCTAD 등 다른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APEC 데이터베이스 경신 및 회원국들로부터 구득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 추가할 정보 결정
(b) 비관세 조치의 점진적 감축이 교역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우선 산업부문' 선별	(단 기) - 1997년: '우선 산업부문'을 선별하기 위해 APEC 기업인자문회의(ABAC),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및 태평양경제협력회의(PBEC) 등 지역협의체를 통해 민간 기업 대표들을 초청하고 각국의 국내 전망을 발전시키며 WTO의 교역 및 관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 - 1998년: '우선 산업부문' 선별을 위해 관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관세, 교역 및 비관세 조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론 개발 - 1999년: 무역투자위원회(CTI)의 협의에 따라 고위실무회의의(SOM)를 통해 각료회의에 제출할 '우선 산업부문'의 목록을 합의에 기초하여 작성
(c)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위해 점진적으로 감축	(단 기) - 1997년: 국별로 WTO의 양식을 이용하여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보를 무역투자위원회(CTI)와 APEC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환 (중 기) - 2000년: APEC 회원국간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수출보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 논의 (지속 추진 조치) - 1997년-2010/2020년: WTO 협정에 따라 철폐를 목적으로 수출 보조를 점차 감축시키는 방안 개발
(d) 부당한 수출금지와 제한 조치 철폐 및 유사한 조치 억제에 노력	(단 기) - 1997년: 국별로 WTO의 양식을 이용하여 부당한 모든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무역투자위원회(CTI)와 APEC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환 (중 기) - 2000년: APEC 회원국간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부당한 수출금지 및 제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 논의 (지속 추진 조치) - 1997년-2010/2020년: WTO 협정에 따라 철폐를 목적으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점차 감축시키는 방안 개발

부표 4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분야 공동 실행계획

항 목	실 행 계 획
1. APEC 회원국간 지적 재산권 관련 대화 강화	<1996-97년 선도국가:의장국> - 1단계: 1996년 8월 도쿄에서 APEC 산업 재산권 심포지움 개최 및 1997년 2월과 3월 방콕에서 APEC/PFP 사업 세미나 개최 - 2단계: 정규적인 세미나와 심포지움 뿐만 아니라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공동 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대화를 심화 - 3단계: 지적 재산권 정책에 관한 실무자급 및 각료급 회의 개최 및 참석
2. 회원국별 관련 법령, 사법적 조치, 행정지침 및 관련 기관의 활동 등 지적 재산권 보호 현황 조사	<1996-97년 선도국가:호주> - 1단계: 각국은 법규에 관한 조사 사항을 선정하여 1996년 6월까지 호주에 제출 - 2단계: 호주는 정보를 대조하여 1997년 8월까지 각 회원국 및 APEC 사무국에 배포하고 관련 법령 등 조사 실시 제안서를 1997년 제1차 지적 재산권 Get-Together에 제출하고 회원국들은 오오사카 행동지침에 일치하도록 조사 범위를 고려 - 3단계: 각국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경신하여 민간 부문에 제공할 것을 검토하며 호주는 APEC 사무국에 회원국들이 정보를 경신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
3.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공공 및 기업/민간 부문의 전문가 접촉 창구 목록 작성 및 위조 범의 해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집행 공무원 목록 작성	<1996-97년 선도국가: 호주> - 1단계: 각국은 1996년 상반기까지 해당 목록을 작성하되 법집행 공무원의 목록은 기밀을 유지하며 1997년 상반기까지 APEC 홈페이지에 유포 - 2단계: 각국은 정기적으로 목록을 경신하고 호주는 사무국에 회원국들의 주의 환기를 요청 - 3단계: 호주는 1997년까지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여 목록의 역할과 효과를 검토하여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고 1997년 하반기까지 적절한 제안을 하며 각국은 필요시, 목록의 범위를 확대
4. APEC 차원의 상표 제도 수립 가능성 타진 위한 첫걸음으로 유명 상표에 대한 정보 교환	<1996-97년 선도국가:태국> - 1단계: 역내 유명 상표 보호방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유명 상표 보호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1996년 하반기- 1997년 상반기) 태국은 합동조사서를 각국에 배포하고 현재의 관행에 대한 논의보고서를 작성 (1997년 상반기까지) - 2단계: 각국은 전문가 실무 그룹을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역내 유명 상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1997년 상반기부터)태국은 유명 상표 보호에 대한 ASEAN의

부표 4(계속)

항 목	실 행 계 획
	작업 최신 결과를 제공 - 3단계: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제도에 맞는 APEC 차원의 유명 상표 인명부 작성 및 상표제도의 확립 가능성을 검토태국은 APEC 협의 회를 개최 〈1996-97년 선도국가:미국〉 5. 역내 지적 재산 권 관리 제도를 단순화, 표준화 하기 위해 현행 관리 제도에 대 한 정보 교환 - 1단계: 각국은 지적 재산권 관리제도를 단순화,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운영 경험을 제공미국은 APEC 회원국들의 상표 등록제도 적용을 촉진시키는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지침을 배포하고(1996년 8월) 각국은 미국이 작성한 설문서의 상표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출(1996년 12월 1일까지) - 2단계: 회원국별 논의 활성화 - 3단계: 각 회원국들의 제도와 재산권 소유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관리제도의 단순화,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 〈1996-97년 선도국가:멕시코〉 6. 지적 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조치 강구 - 1단계: 멕시코는 지적 재산권의 집행과 통계에 대한 현재의 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 양식을 1997년 초반까지 완성하여 배포각국은 통계 자료를 포함한 현황과 향후 집행과 관련된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교환(1997년 초반) - 2단계: 각국은 사례 연구를 비롯한 연구 추진(1997년 하반기부터) - 3단계: 각국은 법 집행의 지도 원칙 작성(1997 하반기-’98 상반기) 멕시코는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원칙의 개발 등 자문 제공 〈1996-97년 선도국가: 임시로 의장국〉 7. 2000년 1월 1일 까지 TRIPS 협 정 완전 이행하 고 이를 위한 기 술 협력 촉진 방 안 검토 - 1-2단계: WTO 회원국들은 각국이 TRIPS 협정상의 보호 표준을 국 내 법규에 이행하는 방법이나 향후 이들 국제 표준을 국내법에 적용 할 계획을 발표하고 비회원국들은 TRIPS 수준의 보호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각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제공 및 요청하고 양자/다자간 기술협력 사업을 전개 (1996년 상반기) 각국은 선도국 가가 실시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출(1996년 말까지)호주, 브루나 이, 캐나다,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및 태국은 조사의 제2부(Part II)에 필요한 정보 제출 - 3단계: 각국은 TRIPS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정보 교환을 검토하 고 TRIPS 협정 이행 이후의 지적 재산권 제도 개선 가능성을 점검

참 고 문 헌

- 김관호, “다자간 투자규범의 추진동향과 우리의 대응,” 「신통상의제와 WTO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에서의 발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6.
- 농림수산부, 「농업통상여건의 변화와 향후 전망」, 1996. 2.
- 농림수산부, 「APEC/제2차 농업기술협력(ATC) 전문가회의 참가자료」, 1996. 5.
-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 “APEC 제1차 SOM 결과,” 1996. 2.
- , “제2차 APEC 고위실무회의 참가 보고,” 1996. 5.
- , “APEC 통상장관회의 참가결과보고,” 1996. 7.
-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 “APEC 제4차 고위실무회의 결과,” 1996. 1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亞·太經濟協力の 新構想」, 정책연구 95-04, 1995. 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의 세계경제동향과 주요 대외경제현안」, 정책자료 96-02, 1996. 6.
- 대한무역진흥공사, 「APEC 무역자유화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무공자료 95-3, 1995.
- 대한상공회의소, 「WTO출범 1주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996. 1.
- 서장원, 「지역주의 추세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세종연구원, 「WTO 체제와 한국의 전략」, 1994. 5.
- 세종연구원, 「APEC의 발전과 한국의 역할」, 1994.
- 손병해, “신지역주의의 전개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 12.
- 손찬현외,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어명근, 김동민, 「APEC과 농산물 무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
보고 P11, 1995. 12.
- 왕윤종,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정책연구 96-04,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1996. 8.
- 우영수,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WTO,” 「신통상의제와 WTO의 미
래」에 관한 세미나에서의 발
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6
- 유장희,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와의 연계: 개방적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1995.10.
- 윤영관,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민음사, 1996. 2.
- 외무부, 「APEC오사카 행동지침(The Osaka Action Agenda)」,
1995. 11.
- , 「제7차 亞·太 經濟協力體(APEC) 閣僚會議 結果報告書
(1995.11.16-17, 오사카)」, 1995. 12.
- 이호생, “WTO 무역-환경 논의 및 협상의 전개와 시사점,” 「신통상의제
와 WTO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에서의 발표논문,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1996. 6.
- 제3차 APEC SOM 대표단(재정경제원, 외무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KIEP), 「APEC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 II (APEC Member
Economies' Individual Action Plans)」, 1996. 8.
- 통상산업부, 「Osaka Action Agenda: 영문관련 자료」, 1995. 10.
- 최영진 외, 「뉴라운드 - UR 이후 새로운 경제 이슈들」, 지식산업사,
1995.
- 최정섭, 임송수, 「무역 환경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우리 농업의 대응
방향」, 농정연구포럼 제39회 정기월례세미나 결과보고서, 농정
연구포럼, 1996. 9.
- Bhagwati, J.,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Univ. Press, 1993.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Philippines. "Summary Conclusions of the Second Senior Officials Meeting for the Eighth APEC Ministerial Meeting." 22-25 May, 1996, Cebu, Philippines

Eor, Myong-Keun, "APEC Trade Libera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itled 「Unsolved Issues of APEC and Their Solutions」, Co-organized by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and KIEP, October 29-30, 1996.

Jackson, J., "Regional Trade Blocs and GATT," 「The World Economy」, 1993.

Krugman, P. R., "Is Bilateralism Bad?,"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1991.

Macaranas, F. M., "Speech of Dr. Federico M. Macaranas," delivered at the Ninth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PECC) Trade Policy Forum, Seoul, Korea, 11-14 September 1996.

OECD,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ynergy and Divergence」, TD/TC(93)/FINAL, 1995.

———, "Agricultural Policies, Markets and Trade: Monitoring and Outlook," various years.

———, "Competition Policy and the Agro-food sector," COM/AGR/CA/TD/TC(96)48.

———, "Market Access After the Uruguay Round," 1996.

———, "The Uruguay Round: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 the OECD Countries," 1995

Schott, J. J., "Trading Blocs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World Economy」, 1991.

연구보고 R348

WTO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 자유화 논의 동향과 대책

적은날 1996. 12. 펴낸날 1996. 12.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 - 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적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